

Vol.45

KISO JOURNAL

기획동향 ●●●

[20대 대선후보들에게 바란다]

디지털 생태계, 두 가지 이정표를 놓치지 말기를
표현의 자유: 오래된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권리

| 박성호
| 홍성수

법제동향 ●●●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시사점
데이터산업법의 의미와 주요 쟁점

| 이상우
| 구태언

국내외 주요소식 ●●●

디즈니 플러스 국내 미디어 시장 진출과 국내 OTT 시장 변화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로 공공서비스 혁신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
: OECD/G20 성명서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과제

| 이상원
| 신설희
| 변혜정

이용자섹션 ●●●

플랫폼 스타트업들의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게임 강제적 섯다운제 폐지... 그 의미와 향후 과제

| 최연진
| 황성기

편집위원 칼럼 ●●●

'플랫폼 규제법(안)'에 대한 비판과 우려

| 김현경

문화시평 ●●●

스튜어트 러셀 저, <어떻게 인간과 공존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것인가>
박태웅 저, <눈떠보니 선진국>

| 구본권
| 이희옥

KISO NEWS ●●●

[20대 대선후보들에게 바란다]

디지털 생태계, 두 가지 이정표를 놓치지 말기를

박성호 /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shpark@kinternet.org)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것이 지난 2020년이다. 인터넷 기업들이 태동하고, 산업이 움트기 시작할 무렵에 협회도 함께 태어났으니 인터넷 산업 역시 어느새 20년의 세월을 지난 것이다. 그 시간 덕분에 지금의 인터넷 기반 산업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서도 가장 중심에 서서, 세계 경제를 끌고 가는 산업이 됐다. 감사하게도 태동기부터 지금까지 인터넷 산업에 몸담고 있는 개인으로서 감회가 정말 새롭다. 시작은 미약했고 지금이 이렇게 창대할지는 몰랐으니까.

지난 20년을 돌이켜보면 인터넷 산업에 가속도를 붙인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다. 첫째는 일상이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된 것이다. 스마트폰이 등장했다. 이 의미는 곧 컴퓨터가 사람들의 손 안에 있으며 인터넷이 이동 중에 가능하게 됐다는 의미다. PC를 통해 제한된 공간에서 이뤄지던 인터넷이 이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덕분에 많은 서비스들이 탄생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웹의 시대에서 앱의 시대로 전환을 맞이하게 된 계기기도 하다. 다른 하나는,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으로 인해 인터넷 산업은 또 한 번 긍정적 모멘텀을 맞이했다. 우리가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시기를 이제는 맞이하게 됐지만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우리는 움직이는 것에 조심스러운 일상이었다. 그렇다 보니 출근, 등교와 같은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이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

이 인터넷이었다. 이를 방증하듯 지난 2년 사이에 급속도로 익숙해진 단어들이 있다. 재택근무, 화상회의 같은 단어들은, 팬데믹 이전의 세상이라면 어쩐지 어색한 단어들이지만 이제는 일상이 돼버린 단어다. 그 중심에는 물리적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사람과 장소를 이어주는 인터넷이 있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선별검사소 안내, 백신 잔여 수량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었을까? 인터넷이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인터넷을 통해서 팬데믹을 조금씩 헤쳐나가고 있었다.

돌이켜보면, 인터넷 산업은 늘 사용자를 향해 왔다. 이용자 후생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손 안에서 원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움직이지 않아도 만날 수 있도록 사용자가 편안해지는 것에 방점을 찍어온 것이다. 그 방점을 찍을 수 있게 만든 것은 인터넷 산업 고유의 DNA인 혁신이다. 구태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한다는 그것. 혁신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기업이 등장하고 또 어느 순간 사라지는 등의 급격한 변화가 수시로 일어나는 특수한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DNA다. 덕분에 인터넷 기업들은 사용자들의 지속적인 선택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줌(Zoom)이 등장했다고 해서 선택지가 화상회의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모니터 앞에서 상의만 깔끔하게 입으려고 했을까? 편리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기반 산업은 사용자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진화해왔다. 그래야 선택받을 수 있음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을 맞이하는 지금, 이 선택으로 세상은 바뀌었다. 이제는 산업이 아니라 패러다임과 문화의 영역으로 인터넷 산업을 바라볼 시점

이다. 인터넷 기반으로 사고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매체부터 달라졌다. TV는 글자 그대로 레거시다. MZ세대부터 60대 어르신까지 지하철에서 유튜브를 본다. 구매 절차 또한 크게 달라졌다. 오프라인 매장은 상징으로서 남을 확률이 높다. 자주 쓰는 카드 하나 걸어놓거나페이 서비스에 충전들 해두고 다양한 커머스 플랫폼에서 우리는 필요한 걸 찾는다. 사람들은 인터넷적으로 사고하고 모바일적으로 행동한다. 바뀐 세상에서 태어나고 자란 1020들, Z세대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역시 디지털 네이티브다. 생활 양식의 기반이 디지털이라는 이야기다. 세계 경제의 축 역시 이동했다. 수출을 중심으로 한 제품의 영토를 넓히는 것보다 디지털 영토를 넓히는 것이 더 주요하게 됐다. 글로벌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자. 이른바 GAMA(Google, Apple, Meta, Amazon)로 불릴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이 디지털 영토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인터넷 기업들 역시 이 디지털 영토를 밖으로는 확장하고, 안으로는 사수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세상이 바뀐 만큼 인터넷 기업들이 만들어 온 디지털 생태계는 대한민국 성장의 동력이자 글로벌 경쟁력의 구심점이 되었다. 디지털 생태계 안의 종사자 수만 어렵잡아 120만 명이다. 국내 반도체 산업 종사자 수가 약 16만 명이라는 것을 고려해볼 때 국가의 지상 과제라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어디에서 실현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산업이 만드는 파생의 효과다. 디지털 산업은 단순히 생산자와 소비자, 또는 제공자와 이용자로 양분되는 시장이 아니다.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일종의 ‘판’을 까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생태

계 내에서 공존하게끔 돼있다. 커머스 플랫폼을 하나의 예로 들어보자면 플랫폼이라는 판이 깔리고, 그 판 안에 소상공인들이 들어오고 소상공인들의 제품을 사고자 하는 소비자가 들어온다. 일종의 장이 서는 것이다. 장이 서게 되면 이제 상점과 소비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광고(손님을 부르고) 비즈니스도 생기고, 엔터테인먼트(즐거움도 주고)도 생긴다. 촘촘하게 생태계가 확장되는 것이다. 120만이라는 동력이 만들어지는 이유다.

디지털 산업이 명실상부 한 국가의 동력이 된 상황에서 더 건강한 성장과 더 커다란 디지털 영토 확보를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두 가지 이정표를 놓아두어야 한다. 특히나, 20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야 무관하게 후보들의 당면 과제인 미래 먹거리 발굴, 미래 세대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는 디지털 산업의 성장과 영토 확장이 필수적이기에 이를 위한 제대로 된 이정표 설정이 필요하다.

첫 번째 이정표는 당연하게도 ‘규제는 심사숙고’이다. 디지털 산업에 대한 선부른 규제 도입은 부작용이 수반될 확률이 높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부르다는 것이다. 산업에 대한 규제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늘 함께 존재한다. 산업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규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 중 하나로 거론될 수 있고 해당 사안의 심각성으로 인해 규제를 통한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면 규제는 유효할 수 있다. 단, 이를 위해서는 심각성이 판단돼야 하고 순기능이 더 유효할 때다. 예를 들어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은 인앱결제 강제로 인한 이용자 후생 축소, 생태계 내 창작자 위기, 생태계 위축 등의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이에 규제를 통한 순기능이 더 크게

기대되기에 유효한 규제가 되는 것이다. 반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무엇보다 심각성에 대한 판단이 전무한 상황에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 이전에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규제를 일순위로 뒀다. 이는 실제로 병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어떤 병인지도 모른 채 수술부터 시작하려는 것과 다름없다. 진단도 없고 다른 치료법에 대한 고려도 없이 시작하는 수술은 다칠 수밖에 없다. 특히나, 디지털 생태계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용자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이 촘촘하게 엮여있기에 선부른 규제 도입으로 어디가 어떻게 뒷날지 모른다. 규제의 순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입 이전에 심사숙고가 최우선 시 되어야만 디지털 생태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두 번째 이정표는 ‘공존으로 시너지’다. 이는 디지털 산업의 숙명이며 지속적인 동력이다. 디지털 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는 다양한 키워드들이 언급된다. 메타버스, NFT(Non-fungible token),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등은 미래의 성장동력인 만큼 디지털 생태계 안에서도 크고 작은 비즈니스가 탄생하고 자라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새로운 서비스가 생태계 안에서 등장하더라도 공존을 기반으로 해야 지속적인 성장이 확보될 것이라는 점이다. 공존, 상생이라고 하면 사회공헌이나 ESG 경영의 연장선상에서 착하고 선한 이미지를 그리게 되는데 틀린 것은 아니다. 다만, 디지털 생태계에서 말하는 공존은 비즈니스의 본질에 가깝다. 공존의 정의는 ‘서로 도와서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정의처럼 디지털 생태계 안의 수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서로 도와 함께 존재해야 비즈니스가 성립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하다. 소상공인 없는 커머스가 가

능하겠는가? 창작자가 없는 콘텐츠 플랫폼이 가능하겠는가?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플랫폼 비즈니스가 계속 성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 공존에 비교적 충실했기 때문이다. 생산자라고 할 수 있는 창작자, 소상공인과의 공존, 소비자인 사용자와의 공존, 이 안에서 새롭게 파생되는 비즈니스와의 공존. 즉, 생태계 안에 다양한 구성원이 존재함을 알고 이 구성원들이 서로 도와 함께 키워나갈 때 디지털 생태계는 더 큰 파급력을 가지게 된다.

이 두 가지 이정표는 사실 산업계에서 지속적

으로 내온 목소리와 다르지 않다. ‘규제 완화’는 입법 기관, 규제 기관을 향해 아직 성장 중인 산업이므로 조금 더 지켜봐 주기를 요청해 왔다. ‘상생’ 역시 보기에 모자랄 수 있으나 이 자체가 비즈니스의 본질이자 동력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키워나가는 것을 실천 중이다. 그럼에도 이 두 가지 이정표를 다시금 강조하는 이유는 이정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산업의 성장이며 디지털 영토의 확장이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에서 이 성장과 확장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기회를 통해 다시금 강조해 본다. **KISO**
JOURNAL

※ Keyword : 20대 대선, IT산업, 공존으로 시너지, 규제는 심사숙고

[20대 대선후보들에게 바란다]

표현의 자유: 오래된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권리

홍성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sshong@sm.ac.kr)



1. 표현의 자유, 왜 중요한가?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 웬지 진부한 주제 같다는 느낌이 든다. ‘선진국’ 대한민국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놓고 다투야 하는 것일까?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그 나라의 발전 수준과 무관하게 늘 중요한 이슈다. 그것은 표현의 자유가 가지고 있는 다음과 같은 중요성 때문이다.

첫째, 표현을 한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이며,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당연한 권리이다.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고, 그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인류의 오래된 삶의 양식이었다. 그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둘째, 표현의 자유는 다른 권리가 보장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어떤 권리가 위협을 받을 때, 우리는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운다. 그 투쟁의 첫 출발점은 바로 나의 권리를 대외적으로 말하고 연대를 호소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가 다른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전제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권의 위협을 받게 된 취약계층 시민이 있다고 했을 때,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조치는 바로, 나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표현’하고 자신의 주장에 동참할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그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면 건강권을 지키기도 어려워진다.

세 번째로 표현의 자유는 어떤 국가나 공동체의 발전 수준을 평가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 어떤 공동체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며, 다양성이 존중된다는 것을 뜻한다. 반목과 갈등보다는 대화를 통해 평화가 유지된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거친 언쟁이 오가더라도,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것과 비교할 수는 없다. 표현의 자유는 그 사회가 더 발전할 가능성을 보장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소수의 의견이 미래를 선취하는 혁신적 이론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 가능성을 봉쇄하지 않는 사회가 영리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2.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새로운 전선

그런데 오늘날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에서는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한국은 물론 이미 민주주의와 인권이 상당 수준 발전한 국가들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다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하나하나 살펴보자. 먼저 오늘날 세계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정치적 분쟁이 오히려 격화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전통적인 대립 구도는, 진보 또는 좌파가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옹호하는 반면 보수 또는 우파는 공동체나 국가의 이익을 위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도 좋다는 쪽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이 구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극단주의와 맞서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시민권의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은 진보와 보수가 별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진보로 분류되는 정부에서 더 강력한 규제를 주장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공격적인 규제를 하거나 무리한 수사나 인신구속까지 불사하는 경우들도 종종 문제가 되어왔다. 이 와중에 표현의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거나 난

민, 이주자, 무슬림 등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을 혐오표현(hate speech)으로 규정하여 규제하자고 한 것은 오히려 진보였다. 여기에 맞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 것은 오히려 보수였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통적인 대립 전선은 그렇게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3.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논쟁

한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전통적인 진보는 더 이상 표현의 자유만을 일방적으로 옹호하지 않는다. 실제로 5.18광주민주화운동 왜곡, 민주화운동 왜곡, 일제 찬양 발언, 가짜뉴스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은 정치적으로 진보에 속한 쪽이었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집회시위의 자유,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모욕죄 적용 등이 쟁점화 됐을 때만 해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전통적 대립이 유지되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꼭 그렇지 않다.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한 집회시위 자유, 가짜뉴스 엄정 대처, 허위보도 강경 대응,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모욕죄 적용 등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똑같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거꾸로 보수에 속해 있는 쪽에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여 정부와 대립하는 것도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전통적인 대립 구도가 깨진 것 자체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오히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치적 대립이 지양되어, 정파적 이익을 초월한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로 표현의 자유가 자리매김된다면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정치적 ‘진영 논리’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또 다른 문제다. 표현의 자유를 정

파적 이익에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 노골화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에서 그동안 논쟁이 되었던 가짜뉴스, 명예훼손죄, 허위보도 대응 등의 문제들에 대해 여야가 치열한 정치적 공방전을 벌였을 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중에 여야가 바뀌었을 때도 각자 이런 입장에서 논쟁을 벌이게 될까?” 이렇게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고전적 대립이 무너지면서 표현의 자유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다면 이견 퇴행이 아닐 수 없다.

4.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본적인 규칙으로 되돌아가자

문제가 꼬였을 때는 원래의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고전적인 논쟁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정하는 것에 집중했다.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거꾸로 그 예외에 속하지 않는 표현의 자유를 확고하게 보장하고자 한 것이다. 이 논법을 구사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이다. 그가 말한 ‘해악의 원칙’(the Harm Principle)에 따르면, 타인에 대한 해악을 막으려는 목적 하에서만 사회가 개인에 대해 강제로 개입할 수 있다고 한다(존 스튜어트 밀, 2010). 이를 표현의 자유에 적용해 보면, 어떤 표현이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경우에만 그 표현을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거꾸로, 구체적인 해악이 없는 표현이라면, 설사 비도덕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라도 사회의 자정에 맡겨야지 국가가 규제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다면 자정에 맡길 수 없는, 타인에게 분명한 해악을 미치는 표현이란 무엇인가? 이 오

래된 질문에 답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실제로 표현의 자유가 비교적 광범위하게 보장되는 미국에서도 폭력 선동, 실제 위협, 싸움을 거는 말(fighting words), 외설, 아동포르노,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감정적 스트레스에 대한 의도적 침해, 국가안보, 군사기밀 관련 표현 등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방송, 공공기관, 상업광고, 학교 등의 일부 영역에서도 일부 표현에 대한 규제를 인정한다. 오랜 정치적 논쟁과 사법적 판단을 통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 영역을 명확하게 확정해온 것이다.

최근에는 혐오표현과 관련해서도 동일한 논쟁의 논쟁이 진행 중이다. 혐오표현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놓고, 혐오표현의 ‘해악’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외 논의를 보면, 혐오표현의 구체적인 해악의 발생 가능성을 논의하면서, 이와 함께, 혐오표현의 정치·경제·사회적 맥락, 발화자의 지위와 영향력, 발화자의 의도(고의성), 혐오표현의 대상집단, 혐오표현의 방법(전파 범위나 반복성 등), 예술적·학술적·종교적 기여 여부 등을 세심하게 살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규제가 정당화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Article19, 2018; 국가인권위원회, 2019; UN, 2019).

이러한 논의는 혐오표현 뿐만 아니라, 가짜뉴스나 공직자 명예훼손 등 오늘날 표현의 자유를 놓고 벌어지는 다양한 사례들을 해결하는데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단순히 ‘바람직하지 않다’, ‘불쾌하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식의 추상적 기준들은 결국 정파적 이익에 동원되기 위한 수사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그보다는 사회적 자정에 맡길 수 없는, 그 해악의

분명한 표현이 무엇인지, 그 범위를 명확하게 확정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5. 표현의 자유에 대한 포럼이 필요하다

다시 강조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다른 권리가 보장되기 위한 전제이기도 하고, 한 사회의 발전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다. 더 이상 표현의 자유를 둘러싸고 소모적인 정치적인 논쟁을 벌여서는 안된다. 표현의 자유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규칙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다시 한 번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포럼을 열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사실 우리에게서 서로 의견을 주고 받고 싸워야 할 주제들이 차고 넘친다. 표현의 자유는 일종의 게임의 규칙이다. 본 게임에 들어가도 치고받고 싸워야 할 문제들이 수도 없이 있는데, 게임의 규칙을 놓고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된다. 그 와중에 중요한 논점들을 토론할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무익한 논쟁을 멈추고 종지부를 찍어야,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르는 다른 주제들을 놓고 논쟁을 이어갈 수가 있다. 표현의 자유는 그 자체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논쟁을 하기 위해서라도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KISO JOURNAL

[참고문헌]

- [1] 존 스튜어트 밀(2010). 『자유론』. 서울: 책세상. .
Article 19(2018). “Prohibiting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
- [2] 국가인권위원회(2019), 『혐오표현 리포트』. .
UN(2019), “United Nations Strategy and Plan of Action on Hate Speech.”

※ Keyword :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한계, 혐오표현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시사점

이상우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 연구원
(sw.lee@inha.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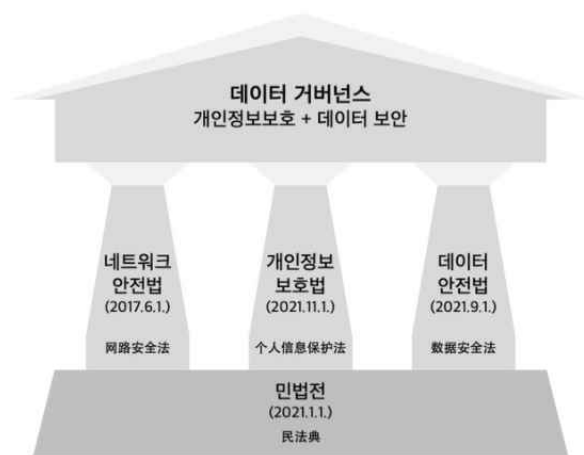


1. 들어가며

2021년 11월 1일, 중국 초대(初代) 「개인정보보호법(个人信息保护法)」이 시행됐다. 2012년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인터넷 정보보호 강화에 관한 결정(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加强网络信息保护的決定)」을 채택한 후 9년 만이다. 총 8장·74개 조항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법」은 2020년 10월 21일 초안이 공개된 이후 10개월 동안 3차례의 심의를 거쳐 2021년 8월 20일 정식으로 제정됐다. 유럽과 미국은 1970년대부터 개인정보보호의 법제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으며¹⁾, 우리나라도 2004년 입법 논의를 시작해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시행한 것에 비하면, 중국의 제정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그러나 중국은 2017년 「네트워크안전법(网络安全法)」, 2021년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보호」를 별도로 규정²⁾하는 ‘장(章)³⁾’을 신설한 「민법전(民法典)」 그리고 올해 9월부터 「데이터안전법(数据安全法)」을 시행하는 등, 신속하게 과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규정이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었던 모습에서 벗어나,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기본법으로서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안에 관한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1] 중국 데이터 거버넌스 법체계 ©저자

1) 박노형(2020), 『개인정보보호법』, 서울: 박영사, 6.

2) 申卫星(2021), 论个人信息权的构建及其体系化, 『比较法研究』, 2021年第5期, 2.

3) 중국 「민법전」, 제4편 제6장.

세계 주요국은 개인정보보호와 이용의 조화로
은 균형점⁴⁾을 찾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
터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공통된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가 2020년 개정을
통해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이하
'GDPR')과의 정합성을 제고한 바와 같이, 중
국 「개인정보보호법」도 GDPR의 주요 내용
이 다수 반영돼 있다. 특히, 역외적용⁵⁾과 개인
정보 이동권(可携带权)⁶⁾ 등 우리나라 「개인
정보 보호법」에는 도입되지 않았거나, 현재
개정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먼저 중국 「개인정보보호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다.

2.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가. 입법목적과 적용 범위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는 “개인정보의 권
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처리⁷⁾ 활동을 규범화
하며, 개인정보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헌법에 의거해 이 법을 제정한다”고
입법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 법에서의 ‘개인정
보’란 전자 또는 기타방식으로 기록된 기(既)
식별되었거나 식별 가능한 자연인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뜻하고, 익명 처리된 정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제4조제1항). 익명 처리를 위
한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 기술적·관리적 가이
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익명 처
리 여부 판단은 해당 개인정보가 최종적으로

규정된 익명화 정의에 부합된 상태인지로 판
단한다⁸⁾.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이 그 적용 범
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과는 달리,
중국은 중국 경내에서 중국 경내 자연인의 개
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는 물론 ① 중국 경내
자연인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② 중국 경내 자연인
의 행위를 분석·평가하는 경우 ③ 법률·행정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는 국외에서 중국 경내 자연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
다고 규정한바(제3조), GDPR 제3조의 영토적
범위 규정과 같이 역외 적용을 명시했다.

나. 개인정보보호 원칙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 용을 위한 법적 근거

개인정보처리자란 “개인정보처리 활동 중에 스
스로 처리목적·처리방법을 결정하는 조직·
개인”을 말하며(제73조제1호), 개인정보처리자
는 ① 합법·정당·필요 및 신의성실의 원칙(제5
조) ② 목적 명확화 및 최소 사용의 원칙(제6
조) ③ 공개·투명성 원칙(제7조) ④ 정확·완전
성 원칙(제8조) ⑤ 안전성 확보의 원칙(제9조)
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한다⁹⁾. 다섯 가
지 개인정보보호 원칙은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의 8개 조항에 규정된 개인정
보보호 원칙과 유사하다¹⁰⁾.

4) 申卫星(2021), 论个人信息保护与利用的平衡, 『中国法律评论』, 2021年第5期(总第41期), 29.

5)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6)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제45조.

7) ‘개인정보처리’는 개인정보의 수집·저장·사용·가공·전송·제공·공개·삭제 등을 포함한다.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제2항.

8) 이상우(2021), 중국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관한 연구 -신(新)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 『중국법연구』, 제45집, 342.

9) 张新宝, 个人信息处理的基本原则, 『中国法律评论』, 2021年第5期(总第41期), 18~27.

10) 이상우(2021), 중국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관한 연구 -신(新)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 『중국법연구』, 제45집,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해서 법적 근거가 요구되는데, 가장 중요한 법적 근거는 ① 개인의 동의 획득(제13조제1호)이며, 그 외 ② 개인과의 계약체결·이행 또는 근로규칙·단체협약에 따른 인력자원관리 실시(제13조제2호)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적 의무 준수(제13조제3호) ④ 공중보건 위기대응 또는 급박한 생명 등 이익 보호(제13조제4호) ⑤ 공익을 위한 뉴스 보도(제13조제5호) ⑥ 자발적·합법적으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제13조제6호) ⑦ 법률·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13조제7호)가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제13조의 법적 근거는 큰 틀에서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GDPR 제6조제1항의 규정과 유사하며, 개인정보의 이용과 개인의 보호 사이에서 합리적 균형을 이루려는 법적 노력을 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제13조 제2호 후단의 “근로규칙·단체협약에 따른 인력자원관리 실시의 경우”는 제2차 심의과정에서 추가됐는데, 이와 같이 해당 심의과정에서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조항이 다수 신설됐다. 아래에서 이를 중심으로 살펴도록 하겠다.

다.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의 특징적인 조항

1) 자동화 의사결정에 의한 차별금지

자동화 의사결정이란, “개인의 행위습관, 취미 또는 경제, 건강, 신용 상황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분석·평가하고 의사결정

을 진행하는 활동”을 말하며(제73조제2항),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는 자동화 의사결정을 통해 각 유형의 소비자에게 차별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했다. 중국의 일부 플랫폼 기업이 회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고객 유치를 위해 신규 고객만을 우대하는 가격정책 시행했는데, 그 결과 기존 고객은 차별대우를 받게 됐고, 이러한 현상은 2018년 사회생활분야 10대 유행어에 선정¹¹⁾될 만큼 이슈가 됐다. 이에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은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차별대우(大数据杀熟)¹²⁾’를 금지하는 조항(제24조)을 신설했다¹³⁾.

2)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민감 개인정보에 추가 등

민감정보를 직접적으로 정의하지 않은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과는 달리¹⁴⁾,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제1항은 민감 개인정보를 “유출 또는 불법적으로 사용될 시 개인의 인격존엄이 침해당하거나 신변·재산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정의한다. 구체적인 예로서 “생체정보, 종교신앙, 특정신분, 의료건강, 금융계좌, 이동경로 등의 정보”와 함께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민감 개인정보로 추가해 미성년자의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특정한 목적 및 충분한 필요성이 있고 엄격한 보호조치를 취한 경우”에만 민감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을 신설한바, 정보주체인 개인의 보호

344~345.

11) Baidu(2021). 大数据杀熟. Available: <https://baike.baidu.com/item/大数据杀熟/22456755?fr=aladdin>.

12) ‘파슈쥐(大数据)’는 빅데이터를 뜻하며, ‘슈(熟)’는 익숙한 사람(기존고객) ‘샤(杀)’는 죽인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고객을 죽이는 행위’로 해석된다.

13) 杨婕(2021), 《个人信息保护法》正式出台——走中国特色的立法之路, 『中电信业务』, 50.

14) 민감 정보의 처리를 제한하는 규정에서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참조, 박노형, 앞의 책, 294.

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지난 10월 5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쿠팡이 중국 자회사 통해 회원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¹⁵⁾. 이와 같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대해서는 유출 등의 우려가 제기되나, 업무상의 필요로 인해 중국 경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제38조제1항은 각 호에서 규정된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 한해 국외이전을 허가하고 있으며, 제2차 심의 과정을 통해 중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협정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국외이전 할 수 있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처리자는 반드시 국외 수취인의 개인정보처리 활동이 이 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표준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가했다.

4)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동권, 个人信息可携带权)¹⁶⁾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 9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¹⁷⁾. 이와 같이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에 규정된 정

보주체의 권리에는 아직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되지 않았지만,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은 제45조에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규정해 개인의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가 서로 다른 플랫폼 사이에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개인에게는 자신과 관련한 개인정보에 대해 더 많은 통제력을 부여하고,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지원하며,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건강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5) 사자(死者)의 개인정보 보호

중국 「민법전」 제994조는 개인정보에게 일정한 인격권이 있다고 보아 근친속(近亲属)¹⁸⁾에게 사자의 성명·초상·명예 등을 침해받을 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여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9조는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반영해¹⁹⁾, 자연인이 사망한 경우 근친속이 법정 조건에 따라 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복제·정정·삭제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사자(死者)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① 합법적이고 정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어야 하며, ② 사자(死者)가 생전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근친속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뒀다.

6)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15) 미디어이슈(2021.10.21.), 양정숙 의원, ‘쿠팡’ 중국 개인정보 처리 타국 이전 약속, Available: <http://www.mediaissue.net/1599868>.

16) 직역하면 개인정보 휴대권 정도로 해석될 수 있으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가장 비슷한 개념의 용어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으로 번역했다.

17) Newsis(2021.9.28.),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전송요구권 도입, Available: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10927_0001594874.

18) 근친속이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가 해당된다. 중국 「민법전」, 제 1045조 제2항.

19) 程啸(2021), 论死者个人信息的保护, 『法学评论』, 2021年第5期(总第229期), 13.

알리바바, 텐센트로 대표되는 중국 빅테크 기업이 플랫폼 산업에서의 지배력이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개인정보) 독점 등의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²⁰). 이에 제1차 심의과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의무 규정이 신설됐으며²¹), 제2차 심의과정에서 이를 ‘중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重要互联网平台服务)’라고 정의한 후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구축 의무를 부가하는 등(제58조제1호)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강화했다. 또한, 스마트폰 APP를 통한 플랫폼 서비스 이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APP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제61조·제66조)

3.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개인정보처리 행위가 있고, 그 정황이 엄중한 경우 5천만 위안(약 93억 원) 이하 또는 전년도 매출액의 5%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며(제66조), 개인정보 침해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제71조)까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역외적용 규정은 중국 경내에 사업장이 없는 우리나라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은 시행에 대비해 개인정보보호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보안이 취약한 부분은 이 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개선·보완해야 할 것이다.

궁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은 2018년 GDPR 시행 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관련 경험이 축적되고 있으며, 이에 기반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고려하면, GDPR이 규정하는 국제기준의 선진 개인정보보호 조치와의 정합성 유지를 위해 제정된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대비해 기존 시스템 위에 상기 중국만의 특징적인 규정을 반영하는 접근이 유효하다. 다만,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국 당국의 재량권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관련 사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스템에 반영하는 노력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중국의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²²)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함께 9월부터 시행 중인 「데이터안전법」에 대한 이해와 대비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위의 그림). 개인정보가 데이터화돼 관리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데이터안전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해당할 것이며, 데이터 및 그 처리 관한 정의(「데이터안전법」 제2조)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중첩되는 영역이 존재한다.²³)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역외적용은 법이론적인 문제 외에도 국력이나 상대국이 자국에 부여하는 시장가치에 따라 좌우되는 사실

20) 이상우(2021), 중국의 빅테크 반독점 규제에 관한 연구 -알리바바 사안에서의 행정처벌결정서 해설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4집 제2호, 4.

21)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제2차 심의안)」(제1차 심의결과가 반영된 안), 제57조.

22) 데이터 거버넌스는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개별 경제주체의 권리보호 및 경쟁을 통한 혁신 보장이라는 역할을 담당하고 이를 위한 규제체계를 마련 및 집행하는 역할을 하며, 이러한 데이터 거버넌스는 국가 전체의 데이터 관리체계와 정부 내에서의 데이터 관리·활용 체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23) 이상우(2021), 중국 데이터 보안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데이터안전법 심의과정에서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중국과 중국학』, 제44호, 85~87.

상 힘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가 타국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중국에 대한 편견으로 금지·제한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해 대등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데이터안전법」 제26조도 타국이 데이터 등과 관련해 중국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취할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해 대등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바²⁴⁾,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이 기존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이슈를 넘어서 정치·국토·군사 등 전통적인 국가 간 긴장 관계 영역에서 개인정보·데이터에 관한 국제 분쟁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에 시발점이 될 수 있다.

UN 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현재 데이터 거버넌스 구조는 EU·미국·중국으로 나뉘어 있는 양상이고, EU는 정보 주체의 권리를 중시하는 반면, 미국은 민간부문에서 중국은 공공부문의 데이터 활용에 비교적 관대한 편으로 평가된다²⁵⁾. 중국 당국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의 방편으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강화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과정에서 형성되

는 개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과 사회 분위기가 중국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이용에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향후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 이용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와 이용의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과정과 같이 빠르고 신중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 전략에서 벗어나, 퍼스트 무버(fast mover)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 시대의 원유(原油)와 같은 ‘데이터’와 원유를 정제(精製)한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을 위한 법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빅테크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중국은 유사한 부분이 있다. 개인정보처리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함도 중요하지만, 입법적인 관점에서도 시사점이 적지 않을 것인바, 중국의 관련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서 K-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의 단초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KISO JOURNAL

※ Keyword : 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 보안,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24) 张凌寒(2021), 个人信息跨境流动制度的三重维度, 『中国法律评论』, 2021年第5期(总第41期), 46.

25) UNCTAD(2021.9.30.), 『International: UNCTAD promotes cross-border data flows in Digital Economy Report 2021』.

데이터산업법의 의미와 주요 쟁점

구태언 / 법무법인 린 변호사
(tekoo@law-lin.com)



1. 들어가며

데이터산업 이용촉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산업법)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 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데이터산업법 제1조). 데이터산업법 제2조에서는 데이터, 공공데이터, 민간데이터, 데이터생산자, 데이터산업, 데이터사업자, 데이터분석제공사업자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데이터산업법은 제2장에서 데이터 생산, 활용 및 보호를, 제3장에서 데이터 이용 활성화, 제4장에서 데이터 유통 및 거래 촉진을, 제5장에서 데이터산업의 기반조성을, 제6장에서 분쟁 조정을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진흥법 체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어떤 법의 위상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과 관계를 살펴봐야 하는데 데이터산업법은 ‘데이

터 생산, 거래 및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데이터산업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 7조 제1항)고 하면서도 ‘개인정보, 저작권 및 공공데이터에 관하여는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제7조 제2항)하고 있다.

2. 데이터산업법의 주요 내용

가.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데이터산업법 제4조)

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3년마다 데이터산업 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정부는 공공, 민간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를 설치하고(국무총리가 위원장), 1) 기본계획 수립, 2)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정책, 제도개선 사항, 3) 데이터 산업 진흥 관련 계획의 총괄, 조정 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 데이터자산보호

정부는 인적,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데이터를 보호하여야 한다. 대표적으로 무단으로 데이터를 취득, 사용,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자산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라.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 품질관리

정부는 데이터 가치평가 기법 및 가치평가 체계, 품질인증 대상 및 품질 인증 기준 등의 마련과 관련 업무를 전담할 가치평가 기관과 품질인증 기관 등 지정을 추진한다.

마. 데이터 사업자 신고

데이터 거래사업자, 데이터 분석제공 사업자 등은 과기정통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과기정통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바. 데이터거래사 양성 지원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과기정통부에 데이터 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거래사에게 데이터 거래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교육을 제공한다.

사. 창업지원, 중소기업자 특별지원

정부는 데이터 기반 산업 활성화 및 기업의 데이터 관련 역량 강화, 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데이터 지원시책 시행 시 중소기업자를 우선 고려하며 데이터 거래, 가공 등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아. 전문인력 양성

과기정보통신부 및 행정안전부 장관은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과기정보통신부 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한다.

자. 데이터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3. 데이터산업법의 평가

가. 입법 과정에서 데이터산업법의 적용영역 대폭 축소

애초 법률안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을 아우르고 있었으나 입법심의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반발로 위 두 법률의 적용영역은 데이터산업법에서 제외됐다. 거기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제외됐고(데이터산업법 제7조 제2항),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다른 법률에 따라야 함으로 결국 국가데이터 중 데이터산업법이 다루는 데이터가 얼마나 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그림1] ©저자

나. 데이터산업법의 적용 범위가 대폭 축소된 결과 이 법의 도입효과 감퇴

위 2장에서 살펴본 대로, 다양한 진흥제도가 도입됐으나 이 법의 적용 범위가 실제로 매우 작아 위 다양한 진흥제도의 효용이 매우 감퇴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각 특별법에 규정된 데이터 보호제도는 그 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다. 정부의 시장개입 폐해를 그대로 답습

데이터산업법에서 도입하는 가치평가기관 지정 제도나, 품질인증 및 인증기관 도입은 민간의 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요소들이다. 이를 국가가 법으로 지정해 시행하는 것은 민간시장에 국가가 당사자로서 개입하는 것으로 절대로 지양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1960~70년대 정부 주도 국가발전시대의 패러다임을 2021년에 제정한 법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의 가치평가는 시장에서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데이터의 가치를 국가가 주도해 평가하는 시스템은 시장경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반한다. 가치가 있는 데이터는 시장에

서 자연스럽게 높은 가격으로 거래될 것이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격 이외의 다른 제한요소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품질인증 및 인증기관도 민간이 해야 할 산업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다. e나라표준에 보면, 국가 인증제도가 무려 210개가 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하나쯤 더 없다는 것 무언가 문제냐고 할 수 있지만 위 200여 개의 인증도 공인인증서처럼 폐지하고 민간산업화해야 할 시점에 시대에 역행하는 국가인증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에 필자는 반대한다.

지면상 자세히 논하지 않지만 전문기관 지정이나, 협회 설립, 데이터거래사 도입과 같은 것도 관치산업을 형성하기 위한 국가의 낙후된 패러다임이다.

4. 개정 방안

가. 국가 주도 진흥에서 민간 주도 진흥으로

데이터산업은 이미 다른 산업과 정보통신망 진흥정책의 중복이거나, 데이터 유통을 가로막는 과도한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같은 걸림돌을 제거해 주면 충분히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걸림돌 규제는 제거하지 않고 데이터 산업을 진흥한다는 것은 소위 ‘진단 없는 처방’이거나 오진에 다름 아니다. 데이터산업은 국가 주도 진흥이 필요 없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데이터산업법의 틀을 대폭 바꿔 현재 규정된 국가 주도형 제도들을 대거 삭제하고, 정부는 민간 주도 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나.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국가데이터규제개혁 위원회로 변경

이미 언급하였듯이 데이터산업의 부진원인은 이를 가로막는 각종 데이터 규제 때문이다. 과다한 개인정보 정의 규정과 사전동의 원칙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이 1999년이다. 비식별정보는 그 자체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적절히 유통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를 막은 결과 우리나라에는 B2C형 인공지능이 출현하지 않고 있다. 해외 빅테크의 인공지능 서비스 발전에 비춰보면 조만간 우리의 주요 플랫폼 산업은 해외 빅테크들에게 장악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주도할 것은 글로벌 수준에 맞지 않는 규제의 해소다. KISO JOURNAL

※ Keyword : 규제해소, 데이터보호, 데이터산업법, 민간데이터

디즈니 플러스 국내 미디어 시장 진출과 국내 OTT 시장 변화

이상원 /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 교수
(swlee2668@khu.ac.kr)



1. 디즈니 플러스 국내 미디어 시장 진출

그동안 OTT 업계에서 소문이 무성하던 디즈니 플러스 서비스(Disney Plus)가 2021년 11월 12일 국내 OTT(Over-the-Top) 시장에 출시됐다. 2016년 1월 넷플릭스(Netflix)가 국내 가입형(Subscription VOD; SVOD) OTT 시장에 진출한 이후 약 5년 10개월 후 애플 TV 플러스(Apple TV Plus)와 디즈니 플러스 두 글로벌 동영상 OTT가 유사한 시기에 함께 출시된 것이다.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글로벌 가입형 OTT 서비스의 국내 미디어 시장 진출 의미와 그 영향을 분석하려면 먼저 글로벌 가입형 OTT 시장에서의 디즈니 플러스의 성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글로벌 가입형 OTT 시장에서 디즈니 플러스는 넷플릭스를 빠르게 추격 중이다. 디즈니 플러스는 가입형 OTT 경쟁 서비스인 넷

플릭스의 기본형 서비스의 요금인 8.99달러의 52.5% 수준으로 미국 시장에서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2021년 4월 초 가입자 수 1억 명을 돌파했고, 2021년 11월에는 1억 1800만 명을 돌파했다. 현재 글로벌 가입형 OTT 시장에서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넷플릭스는 2021년 3분기 현재 2억 14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어서 상대적인 격차가 있지만 표면적인 가입자 수 외 다른 논의와 분석이 필요하다.

먼저 넷플릭스는 가입자 수 1억 명을 돌파하는데 약 10년의 기간이 걸렸지만, 디즈니 플러스는 약 1년 5개월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1억 명을 돌파했다. 물론 디즈니 플러스의 빠른 성장은 넷플릭스의 전 세계 성장으로 인해 가입형 OTT 시장의 수요가 이미 상당히 커져 있는 상태에서 시장에 진입함으로 인해 초기에 OTT 시장을 개척해야 했던 넷플릭스와는 시장환경과 구조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즈니 플러스의 빠른 글로벌 시장 성장과 그 영향은 미디어 시장에서 충분히 분석될 필요가 있다.

넷플릭스는 2019년 11월 디즈니 플러스(Disney +)가 SVOD 시장에 진입하면서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으며, 2026년에는 디즈니 플러스가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를 앞설 수도 있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Digital TV Research, 2020).



[그림1] 글로벌 가입형 OTT 플랫폼 시장 추정(2020-2026),(단위 : 천명).
© Digital TV Research(2020).

물론 이와 같은 추정은 현재 시장 성장 패턴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는 가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지화 전략, 콘텐츠 투자, 전략적 제휴, 플랫폼 서비스, 가격전략 등 다양한 요인들의 변화에 따라 미래 시장에서 추정과 실제 시장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많다고 볼 수 있다.

디즈니 플러스는 2020년까지 50억 달러를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투자했다. 2019년 4월까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12개국에 진출했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화 전략을 구사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넷플릭스와 글로벌 SVOD 시장 1위를 다툴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디즈니 플러스는 출시 이후 7500여 편 이상의 TV 시리즈와 500편 이상의 영화 및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제공된 오리지널 콘텐츠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OTT 시장에서 디즈니 플러스는 LG 유플러스(LGU+)와 PIP 방식으로 전략적 제휴를 맺었고, KT와는 모바일 제휴를 맺었다.

그러나 2021년 11월 국내 OTT 시장에서 서비스 출시 이후 현재까지 디즈니 플러스에 대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예를 들어 원래 디즈니 플러스 가지고 있는 콘텐츠 외에 국내 제작 프리미엄 오리지널 콘텐츠가 부족한 점, 플랫폼 서비스 측면에서 이용자 편의성의 문제점 및 비교적 높은 가격 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2. 디즈니 플러스의 국내시장 진출로 인한 변화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글로벌 OTT의 국내 시장 진출과 성장은 어떤 변화를 초래할 것인가? 먼저 OTT 이용자 측면에서는 복수의 유료 OTT 플랫폼을 이용한 이용자 수를 증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KBS 공영미디어 연구소의 2020년 조사에서 국내 모바일 OTT 이용자는 평균 약 1.7개의 유료 동영상 OTT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희대학교 이상원 교수 연구팀의 2021년 10월 조사에서는 평균 1.89로 나타났다. 디즈니 플러스의 국내시장 진출은 전체 OTT 시장에서 경쟁의 강도를 크게 하면서 시장 규모 확대를 가져오는 동시에 복수 유료 OTT 서비스 이용자의 증가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유료 OTT 시장이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 2021년 1월 전체 초고속 인

터넷 이용 가구의 약 54%가 4개의 유료 OTT 플랫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디즈니 플러스의 국내시장 진출은 이용자 측면에서 IPTV와 같은 유료방송 플랫폼을 통한 PIP(Platform-in-Platform) 방식의 OTT 시청자 수 증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최근 OTT 시장에서 넷플릭스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스마트 TV로 OTT 서비스를 시청하는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디즈니 플러스와 LG 유플러스의 PIP 방식을 통한 전략적 제휴는 단기간에는 스마트 TV를 통해 큰 화면으로 OTT 콘텐츠를 시청하는 이용자 수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글로벌 OTT 서비스의 국내시장 진출은 OTT와 관련된 다양한 결합상품 확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일부 IPTV 플랫폼에서는 복수의 OTT 결합상품이 제공되고 있으며, 향후 더 다양한 OTT 플랫폼이 PIP 방식으로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국내 OTT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미 쇼핑 멤버십 서비스와 OTT 서비스 결합을 추구하고 있다. 2020년 12월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이 구독형 쇼핑 멤버십 서비스인 쿠팡로켓와우 멤버십에 쿠팡플레이 동영상 OTT 서비스를 추가한 사례와 2021년에 네이버가 네이버플러스 멤버

십에 OTT 서비스 티빙을 추가하고, SK텔레콤은 이커머스 사업자 11번가와 함께 동영상 OTT 서비스 웨이브를 추가해 결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들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쇼핑 멤버십과 OTT 서비스의 결합은 콘텐츠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글로벌 OTT 사업자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국내 OTT 플랫폼 사업자들이 쇼핑과 OTT 서비스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와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를 추구하면서 플랫폼 이용자의 플랫폼 체류 시간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고객을 자사 플랫폼에 묶어두는 록인효과(lock-in effect)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디즈니 플러스의 시장진출과 이에 따른 변화는 어떤 요소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러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디즈니 플러스의 현지화 전략 구사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 오리지널 콘텐츠를 위한 콘텐츠 투자 증가 및 다양한 국내 미디어 사업자와의 전략적 제휴가 미래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소가 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요소들과 결합상품 및 가격전략 등도 경쟁력에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KISO JOURNAL}

[참고문헌]

- [1] 이상원 (2020).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동영상 OTT 산업: 전략과 정책 방향 모색>. 서울: 한울아카데미.
[2] KBS 공영미디어연구소(2020). 2020 미디어(OTT) 이용행태 조사.

※ Keyword : 디즈니 플러스, OTT, 국내 미디어 시장 진출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로 공공서비스 혁신



신설희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책임연구원
(ssh0124@nia.or.kr)

1. 들어가며



2020년 11월,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AWS, MS, Google, Oracle, IBM 5개사와 100억 원 규모의 멀티 클라우드 계약을 체결했다. 2013년에 체결한 CIA 클라우드 계약은 CIA의 데이터센터 내부에 AWS 클라우드서비스를 구축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였던 것과 달리 이번 계약은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 중 멀티 클라우드 형태로 추진된다.

클라우드서비스 제공기업이 다수인 만큼 IaaS(인프라형 소프트웨어), PaaS(서비스형 플랫폼),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타 전문 서비스도 모두 이용 가능하다. 또한 프로젝트 목적과 클라우드 제공기업이 어떤 서비스에 강점이 있는가에 따라 선택적 이용이 가능하고 이용한 만큼만 과금하는 종량제 형태로 계약을 추진했다.

CIA, 미국 국방부(DOD)처럼 국가안보 등 최고 기밀(Top Secret)의 정부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관도 이미 거대한 시장에서 노하우를 습득한 민간의 기술력을 쫓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도입을 결정했다. 이처럼 해외 공공부문은 민간의 고품질의 안전한 첨단 서비스를 활용해 공공서비스 혁신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도 이에 발맞춰 2015년 9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을 시행하고, 제1차·제2차 클라우드 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전면 전환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클라우드 전환 초기 단계로,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미흡하고 공공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을 이유로 국가 전반으로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확산되는 데 한계에 놓여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21년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클라우드 대전환을 통한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비전으로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2~‘24)’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3차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 및 공공기관에도 민간 클라우드를 적극 도입해 관련 산업을 키우기로 결정했다. 바로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 클라우드 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포함한 3대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번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에 담긴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2. 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클라우드 산업의 마중물 역할과 공공부문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기존의 ‘클라우드 퍼스트’에서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로 기조를 전환해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5대 원칙을 정립했다.

첫 번째는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으로, 정부·지자체 등이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허용된 영역에서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 이용해 공공서비스를 혁신 선도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로는 공공부문 전 영역에서 민간 이용을 허용한다. 현재는 국가기밀, 안보, 수사, 재판 뿐만 아니라 정부·지자체 내부 업무 시스템에도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금지돼 있다. 이 부분을 개선해 정부·지자체의 내부 업무 시스템도 보안성이 검증된, 보안인증(CSAP)을 획득한 민간 클라우드는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세 번째로 혁신성, 효과성, 지속 갱신성이 원활한 SaaS를 공공부문에 우선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기관이 서비스를 새로 구축하거나 고도할 경우 SaaS를 우선 도입하도록 했다.

네 번째로는 단순 클라우드를 마치 기존 방

식으로 전환하는게 아니라 클라우드 네이티브 설계를 통한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적절한 SaaS가 없을 경우 PaaS 기반으로 탄력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개발 시간과 운영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는, 단순히 컴퓨팅 관점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현대화와 혁신을 통해 클라우드서비스의 단순 전환보다도 신기술 적용 및 첨단 구조 기반의 혁신형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위 원칙에 따라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인식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을 위해 우선적으로 민간 클라우드 이용 대상 기관과 대상 시스템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공공기관에만 제한된 민간 클라우드 이용의 노력 의무를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을 포함한 전 국가기관 등으로 넓히고,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제한된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내부 업무(인사·성과, 예산·회계, 시설물·사업관리 등) 영역도 민간 클라우드 안정성과 보안 등을 고려해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부문이 자발적으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평가 및 포상 등 보상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 이행 현황 및 성과 등을 점검하기 위한 체계를 관계 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공공이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에 적합한 방식으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사용량에 따

라 과금하는 종량제 예산집행 방식을 마련하고, 낙찰차액도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지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공공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적극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해 공공에서는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확대를 위한 민간 클라우드 이용 지원 서비스와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 선도 프로젝트 등을 지원한다.

클라우드 이용 지원 서비스는 민간 클라우드 이용 경험이 부족한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사업 기획, 발주, 수행 등 단계별로 겪는 어려움에 대해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클라우드 지원 서비스 기업이 공공에 상시 기술 지원 및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은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단순 인프라 전환이 아닌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등의 첨단 기술 서비스를 도입하고 MSA 등의 클라우드 맞춤형 서비스 설계 등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디지털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공공의 수요를 기반으로 민간 클라우드 전환 시 업무 생산성 향상, 대민 서비스 혁신 등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혁신 선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공공에서 이용할 수 있는 SaaS 서비스가 해외와 비교했을 때 많이 부족하여 이를 확충하기 위해 수요가 높은 SaaS를 선제적으로 개발·전환 지원하고 개발된 공공용

SaaS는 디지털서비스로 등록될 수 있도록 지원해 공공부문 SaaS 유통과 공공 도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3. 마치며

정부는 이번 제3차 클라우드 기본계획을 통해 공공에서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신속히 확산해 정착되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선제적인 활성화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공과 산업 전 분야에 클라우드 이용이 전면 확산되고, 경쟁력 있는 클라우드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보인다. 특히 공공의 경우에는 국가 클라우드 전면 전환을 통해 데이터·AI 경제를 가속화하고 행정 유연성과 서비스 신뢰도가 향상된 공공서비스가 구현돼 우리나라가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하는데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KISO JOURNAL

[참고문헌]

[1] ZDNet 관련기사 링크(2014.8.5.).

<https://www.zdnet.com/article/cias-amazon-cloud-goes-live-firewalled-and-private/>

[2] Nextgov(2020.11.20.).

<https://www.nextgov.com/it-modernization/2020/11/exclusive-cia-awards-secret-multibillion-dollar-cloud-contract/170227/>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1.9.).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2~'24)』,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2~'24)』.

※ Keyword : 공공부문 클라우드 퍼블릭화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 : OECD/G20 성명서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과제



변혜정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hyejungbyun@naver.com)



OECD/G20에서의 논의 과정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을 의미하는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는 국가 간 조세제도가 서로 달라 나타나는 허점이나 기존 국제 조세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또는 조세절감 행위를 가리킨다. 다국적기업의 경우 인위적으로

기업지배구조나 거래구조를 고안해 실질적으로 경제적 활동이 이뤄진 국가에서는 과세소득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고 유효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과세소득이 많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세 부담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BEPS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서는 국가 간 긴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에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 2012년 G20 정상회담에서 BEPS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명확히 했고, 이에 따라 2013년 OECD에서 BEPS 프로젝트를 시작해 2015년까지 15개의 실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했다.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 문제는 BEPS 프로젝트 실행계획의 첫 번째 항목을 차지할 만큼 주된 관심사가 되어왔다. 디지털 경제에

서는 시장이 소재하는 국가(market jurisdiction, 이하 '시장소재국')에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등 과세대상이 되는 실체(taxable presence)를 만들지 않고도 충분히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상당수의 다국적기업은 이를 이용해 시장소재국에는 사업기능이나 자산, 위험 등을 최소화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실체를 만들지 않는 한편, 세율이 낮은 국가에는 계열회사를 설립해 주요 사업기능과 자산, 위험 등을 집중시키는 동시에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이 계열회사에 유보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세 부담을 낮추고 있다. 그 결과 시장소재국의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상대적으로 다국적기업보다 높은 세 부담을 지게 된다.

OECD와 G20은 관심 있는 국가들이 함께 BEPS 관련 문제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고 BEPS 프로젝트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협의체인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이하 'IF')를 출범시켰다. IF는 2018년부터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BEPS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논의를 주도해왔으며 2020년 1월 개최된 회의에서 두 가지 방안으로 접근해가기로 했다. 일명 '디지털세'라고 불리는 이들 두 가지 방안은 'Pillar 1: 시장소재국에 대한 과세권 배분'과 'Pillar 2: 국제적 최저한세율 도입'이다. 2021년 11월 현재 141개국이 IF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137개국이 이들 방안에 동의했다.

IF는 지난 7월 마침내 디지털세에 대한 합의안을 공개했으며, 이후 지난 10월 31일에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디지털 경제에

서 발생하는 조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두 가지 방안에 관한 성명서(Statement on a Two-Pillar Solution to Address the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를 채택했다. 내년까지 이에 대한 후속 검토 작업을 거쳐 세부기준을 협의하고 각 국가 간 인정 절차를 거쳐 2023년부터 이들 제도를 발효·시행할 예정이다.

Pillar 1: 시장소재국에 대한 과세권 배분

매출 발생지역과 과세권을 잇는 과세 연계점(nexus)에 근거해 다국적기업이 실제 용역을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Pillar 1의 주된 내용이다. 즉, Pillar 1에 의하면 전 세계 매출액(global turnover)이 200억 유로(약 27조 원) 이상이며 이익률(profitability)이 10% 이상인 다국적기업의 매출액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해당 기업이 영업이익을 얻은 시장소재국에 배분하게 된다. 매출액 기준은 실제 집행 경험 등을 고려해 시행 7년 후에는 100억 유로로 축소할 예정이며, 채굴업과 규제대상인 금융업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권을 배분받기 위한 과세 연계점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해당 관할권 내에서 적용대상 다국적기업의 매출액이 100만 유로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GDP가 400억 유로 이하인 국가에서는 매출액이 25만 유로 이상인 경우 과세 연계점이 형성된다. 매출은 재화나 용역이 사용 또는 소비되는 최종 시장소재국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적용대상 기업의 이익 중 이익률 10%를 넘어서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국에 부여한다. 다만, 해당 기업이 시장소재국에 배분하는 과세권의 대상이 되는 초과이익에 대해 이미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권의 규모를 제한한다. 과세표준은 회계를 기반으로 해 일부 조정을 거쳐 결정하고 손실의 이월은 허용된다. 구분 회계는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한다. 과세권의 배분에 의해 이중과세가 발생할 경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방식을 이용해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다국적기업 내 하나의 법인이 Pillar 1과 관련한 절차를 일괄해 수행해야 한다. Pillar 1 합의 시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세 및 유사한 과세는 폐지 또는 도입을 취소해야 하며 새로 도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Pillar 1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의무적·강제적 분쟁 해결 절차에 의해 조정되며 디지털세를 도입·운영하는 모든 국가는 해당 조정 결과에 구속된다.

Pillar 2: 포괄적 최저한세 도입

Pillar 2에서는 연결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최저한세율인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다국적기업들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소재한 자회사에 이익을 집중 시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다만, 정부 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및 투자펀드 등은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급여비용 및 유형자산 순장부 가치 등에 의한 실질 사업 활동 지표에 대하여는 최소 7.5%의 고정률을 적용해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시행 5년 이후에는 최소 5%의 고정률이 적용된다. 톤세 제도를 적용하는 해운업계의 특징을 감안해 국제 해운 소득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Pillar 2는 서로 연관된 국내법상 규칙(domestic rule)인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 또는 IIR)과 비용공제부인규칙(Undertaxed Payment Rule 또는 UTPR), 그리고 조세조약상 규칙(treaty-based rule)인 원천지국과세규칙(Subject to Tax Rule 또는 STTR)으로 구성돼 있다.

소득산입 규칙에 의하면 자회사가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에 미달해 저율 과세 되는 경우 최종 모회사가 해당 미달세액만큼을 최종 모회사의 소재국에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이 실효세율이 10%인 국가에 자회사를 두는 경우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5%에 해당하는 세액을 최종 모회사가 있는 국가에서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개별 국가에서 연결매출액이 7.5억 유로 미만인 다국적기업에 대해서 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비용공제부인규칙에 따르면 반대로 최종 모회사가 저율 과세 되는 경우 해외 자회사들이 미달세액만큼을 자회사의 소재국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기업들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용공제부인규칙은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세조약상 규칙인 원천지국과세규칙에서는 저세율국에 소재하는 국외 관계사(related party)에 지급되는 이자나 사용료 등에 특정 세율 수준보다 낮은 명목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양자조약에 근거해 원천지국에 추가 과세권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각 국가는 이러한 Pillar 2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도입할 경우 IF에서 합의된 방식을 준수할 의무를 지며, 또한 다른 국가가 Pillar 2를 적용할 경우 이를 수용할 의무를 진다.

디지털세 도입의 영향과 과제

이러한 성명서의 내용대로 2023년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전 세계 조세제도와 기업환경은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각국은 그동안 자국에서 상당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던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가지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100여 개 정도의 기업에 대해 이번 성명서의 내용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특히 구글, 애플, 메타(舊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으로 대표되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저세율국에 진출해 이익을 취해왔던 경영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Pillar 1의 적용을 받아 해외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반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거대 플랫폼기업 중 80여 개 정도에 대해 한국 정부가 과세권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Pillar 1의 적용으로 수천억 원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Pillar 2가 적용됨으로 인해 수천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디지털세는 디지털 경제에서 다국적기업으로 인해 발생한 조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적 논의의 산물이며, 그 이행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합리적인 세부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다면 다국적기업의 조세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될 수도 있고 국가 간 충돌과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관련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내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충돌과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세의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국내법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의 개정이 필요하다. 관련 조세제도와 행정에 있어서 대비가 미비할 경우 세수일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조세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 위축될 수도 있다. 나아가 디지털세로 인해 달라지는 기업환경을 고려한 효과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의 마련도 필요하다.

KISO
JOURNAL

※ Keyword : 과세권 배분, 디지털경제, 디지털세, 최저한세

플랫폼 스타트업들의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최연진 / 한국일보 기자
(wolfpack@hankookilbo.com)

기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추구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큰 특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속속 등장하는 스타트업들을 들 수 있다. 건강, 유통, 법률, 제조, 패션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등장하는 스타트업들은 첨단 기술과 기발한 아이디어로 기존 사업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존의 시장 지배적 세력들과의 갈등이다. 어찌 보면 이는 스타트업들의 숙명일 수 있다. 스타트업들이 내세우는 혁신은 곧 기존 체제의 변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존 사업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시장 잠식, 즉 시장을 빼앗기는 것이다.

로톡, 강남언니, 자비스, 빅밸류, 닥터나우 등 다양한 플랫폼들 갈등 발생

기존 산업과 갈등을 빚는 대표적 사례가 법무 관련 스타트업 로앤컴퍼니다. 법률서비스 ‘로톡’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로앤컴퍼니는 2015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세 번이나 변호사 단체들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2014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이 업체는 매달 일정액을 받고 변호사들의 광고를 게재한다. 로톡은 그동안 약 4천명의 변호사가 회원으로 가입해 광고를 실었다.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직역수호변호사단 등 여러 이익단체들은 이를 변호사법 위반인 변호사 소개 행위로 봤다. 변호사법에서는 법률 사건이나 법무사무소를 소개한 대가로 중개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돼 있다.

하지만 로앤컴퍼니는 단순 광고일 뿐 변호사 상담 및 사건 수임 관련 중개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로앤컴퍼니는 세 번의 고발 중 두 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직역수호변호사단이 2020년 11월 제기한 세 번째 고발은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조사 중이다.

변협은 두 번의 고발이 무혐의로 끝나자 2021년 11월 초 변호사들이 포털을 제외한 다른 온라인 서비스에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회의 광고 규정을 개정해 로앤컴퍼니를 압박하고 있다. 자체 징계권을 가진 변협은 광고 규정을 어기는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로앤컴퍼니는 “로톡에 광고를 못하게 막는 것은 대형 법무법인을 제외하고 알릴 방법이 적은 개업 변호사들의 영업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성형 정보 앱 ‘강남언니’를 제공하는 힐링페이퍼와 ‘바비톡’ 개발업체 케어랩스도 의사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의협은 두 업체가 성형 전문 병원들에게 돈을 받고 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의료법 위반인 병원 소개 행위로 봤다. 그러나 두 업체는 로앤컴퍼니와 마찬가지로 광고만 게재할 뿐 환자를 병원에 직접 소개하는 것은 아니어서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2021년 초 강남언니와 바비톡에 광고를 게재하는 개인병원들에 공문을 보내 광고를 중단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다. 힐링페이퍼 관계자는 “의협이 이용자와 병원 모두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 서비스를 사실과 다르게 불법으로 몰아간다”고 주장했다.

병원에 가지 않고 인터넷 영상진료로 대신할

수 있는 원격진료를 놓고도 의료계와 스타트업 사이에 갈등이 만만찮다. 정부는 2020년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한시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했다. 즉 코로나19 상황이 심각 단계일 경우 병원 방문 등 대면 진료가 여의치 않은 상황을 감안해 인터넷 영상으로 진료와 약 처방을 할 수 있는 원격진료를 조건부로 한시적 허용한 것이다.

이에 닥터나우 등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원격진료와 약 배달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이들의 운명은 알 수 없다. 정부가 원격진료의 지속 허용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장관령 대로라면 코로나19가 완화되면 원격진료를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렇다 보니 원격진료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선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3개 단체는 2021년 10월 25일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원격진료 플랫폼 허용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단순 편의성 때문에 환자 대면 원칙을 훼손하면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닥터나우가 공동 회장을 맡은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도 원격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에는 관련업체 20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는 “1년간 원격진료 이용횟수가 300만 건에 이른다”며 “그만큼 원격진료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세무사들도 스타트업과 충돌했다. 핀테크 스타

트업인 자비스엔빌런즈는 2021년 4월 대한세무사회와 세무사고시회로부터 세무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고발을 당했다. 세무사들은 이 업체가 제공하는 간편 세무 회계 서비스인 ‘자비스’와 종합소득세 신고처리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삼쩜삼’이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 업무를 대리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자비스엔빌런즈는 납세자들의 자신 신고를 돕고 세무사와 기업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일 뿐 세무 대행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심지어 정부에서 법 적용 예외 대상으로 정한 샌드박스 스타트업마저 이익단체들과 갈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프롭테크 스타트업 빅밸류는 금융위원회에서 서민들과 은행의 고민을 덜어준 혁신 서비스 기업으로 보고 샌드박스 업체로 지정했다.

그런데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2020년 5월 빅밸류를 유사 감정 행위를 했다며 고발했다. 이 업체가 AI로 전국 부동산 시세를 분석해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시세를 추정해 은행에 제공하는 ‘빌라시세닷컴’을 유사 감정 행위로 본 것이다. 빅밸류의 서비스는 서민들이 연립이나 다세대주택 구입 시 은행의 대출 산정 근거로 쓰인다. 그동안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시세 정보가 없어서 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받기 어려웠다. 결국 빅밸류는 1년간의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부의 적극적 행동 필요

이처럼 여러 분야에서 스타트업이 성장할수록 기존 산업 및 이익단체들과 갈등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의 조정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보면 정부의 역할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 로톡과 강남언니 사태 등에 대해 주무부처에서는 스타트업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지만 정작 필요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

2021년 10월13일 코리안스타트업포럼 주최로 열린 ‘혁신 스타트업 활성을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변협이 징계권으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의 탈퇴를 유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로톡이 합법이라는 의견을 경찰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박 장관과 법무부의 이런 의견이 얼마나 실효성을 갖는지는 의문이다. 변협이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면 법무부가 사후에 이를 무효화할 수 있다. 변협도 이를 잘 알기에 징계를 하지 않고 위협만으로 효과를 내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법무부의 사후 감독권은 의미가 없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도 같은 자리에서 강남언니 사태와 관련해 “의료인 단체에서 지나친 판단을 하는 것 같다”며 “(의료인 단체에) 좀 개선해달라고 논의해 보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역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에서 머뭇거리는 사이 관련 스타트업들은 사업이 존폐 위기로 몰릴 수도 있다. 로톡은 변협의 징계 경고로 변호사 1,200명이 탈퇴하면서 실제로 위기를 맞고 있다.

샌드박스도 해당 스타트업 선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샌드박

스 업체였던 빅벨류의 김진경 대표는 “감정평가사협회의 고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알아서 해결하라는 말만 들었다”며 “이런 식이면 샌드박스 선정이 의미가 없다”고 한탄했다.

즉 정부에서 제도 개선 등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이때 판단의 기준은 국민과 산업 발전에 미치는 이로움이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관계자는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혁신 서비스라면 공리주의적 시각에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샌드박스도 1회성 선정으로 그칠 게 아니라 갈등 발생 요인을 제도 개선

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양한 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거대 IT 플랫폼들을 감안하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적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정부의 노력과 지혜가 필요하다. 정부가 기득권 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머뭇거리는 사이 해외 기업들이 탄탄한 준비를 하고 국내에 들어와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스타트업들만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실기하는 것이다. 혁신은 이런 기득권 세력을 뒤집는 것에서 시작된다. KISO JOURNAL

※ KISO저널에 게시 및 수록된 글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Keyword : 로앤컴퍼니, 샌드박스, 스타트업갈등, 플랫폼스타트업

게임 강제적 섯다운제 폐지... 그 의미와 향후 과제

황성기 /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의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sghwang@hanyang.ac.kr)



지난 여름 마인크래프트 사례를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던 게임 강제적 섯다운제가 드디어 도입된 지 10년만에 폐지됐다. 정부는 8월 25일 관계부처(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합동으로 마련한 ‘섯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청소년보호법 상의 ‘게임 강제적 섯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법 상의 ‘게임시간 섯택제’(섯택적 섯다운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하는 동시에 청소년과 보호자, 교사 등에게 게임이해 교육

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후속조치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게임 강제적 섯다운제를 규정하고 있던 청소년보호법 조항을 삭제하는 골자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결국 게임 강제적 섯다운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청소년보호법 상의 게임 강제적 섯다운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4월 24일 합헌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은 게임 강제적 섯다운제가 위헌이 아니라는 의미이지, 결코 좋은 정책이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사실 게임 강제적 섯다운제 논쟁은 2014년도의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통해서 종식되거나 완결되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진행중이었고, 최근 마인크래프트 사례를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던 것이다.

게임 강제적 섯다운제는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년의 수면권 보장을 명분으로 제인이 이루어진 2004년도 애초부터 ‘문제의 소재’와 ‘비난의 대상’을 혼동한 것이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수면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은 왜곡된 입시제도 및 과도한 교육열과 사교육 문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을 학업에 투입하는 반면 수면시간이나 여가시간은 이례적으로 적다고 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한 채, 게임만 비난함으로써, 오히려 부모와 국가는 자신들의 근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점이 강제적 섯다운제의 본질이다.

또한 게임 강제적 섯다운제는 전근대적이고 국가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기대는 것이고, “모든 문제에는 간단하고 멋지지만 잘못된 해결책이 있다”(H. L. Mencken)는 말이 꼭 들어맞는 잘못된 제도이다. “모든 문제에는 간단하고 멋지지만 잘못된 해결책이 있다.”는 말은 미국연방수사국(FBI)가 학교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한 보고서에 인용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고 한다. 미국연방수사국(FBI)는 학교 총기난사 사건의 발생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인용했다고 한다.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이 평소에 슈팅게임을 즐기는 사람이었다고 해서 게임이 총기난사 사건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단정해서도 안된다는 취지이다.

청소년의 게임이용과 관련해, 이번 강제적 섯다운제의 폐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보아야 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섯다운 시스템의 유형과 관련해서, 크게 다음과 같이 4가지 정도가 상정 가능하다.

제1안은 자율규제안이다. 섯다운 시스템의 적용을 개별 사업자 및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이다. 섯다운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는 게임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게 하는 것이다. 현재 게임자율규제기구로 기능하고 있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에서 게임시장에 대한 감시(섯다운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해서,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게임에 대해 공표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등)를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는 자녀의 게임이용에 대한 부모의 원활한 교육과 지도를 위해, 게임시장에서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사의 게임이용 관련 정보를 부모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림1] 넥슨 자녀사랑 시간자키미 서비스

제2안은 옵트-인(opt-in) 안이다. 청소년보호법 상의 강제적 섯다운제가 폐지된 이후 남게 되는 현행 게임법 상 섯다운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청소년이나 부모가 섯다운 시스템의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 비로소 사업자는 적용의무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제3안은 옵트-아웃(opt-out) 안이다. 기본적인 디폴트는 강제적 섯다운제이고, 청소년이나 부모의 요청시 해제해 주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규제 개선의 효과가 거의 없다. 디폴트가 강제

적 섯다운제이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 상의 강제적 섯다운제가 갖는 문제점이 고스란히 존재한다. 즉 원칙과 예외가 여전히 전도되어 있는 방안이다.

제4안은 예외 없는 일률적, 강제적 섯다운제안이다. 이번에 폐지된 청소년보호법 상의 강제적 섯다운제이다. 헌법적 문제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사실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부모의 자녀교육권으로 상징되는 가족의 자율성이라는 헌법원리와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정도로 우선 순서를 매긴다면, 제1안(자율규제안) > 제2안(오프-인 안) > 제3안(오프-아웃 안) > 제4안의 순서가 가능하다. 다만 제1안인 자율규제안은 헌법적 문제점이 전혀 없는 방안이기는 하지만, 시장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과도기적으로 자율규제방안과 제2안인 오프-인 안을 결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게임법 상의 섯다운제도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가 청소년의 게임이용에 개입하는 것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여 청소년보호에서의 국가후견주의의 한계를 일탈할 위험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게임 강제적 섯다운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청소년보호정책의 수준을 상징하는 규제였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청소년보호정책의 패러다임적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청소년을 보호의 객체로만 보지 말고 인권의 주체로서 인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게임 강제적 섯다운제는 전자에 '과몰입'된 정책이었다. 게임 강제적 섯다운제를 유지하는 한 우리나라의 청소년보호정책은 구시대적 패러다임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와 문화에 상응하는 청소년보호정책의 진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게임 과몰입 청소년 및 가정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즉 네거티브 방식이 아닌 포지티브 방식으로 청소년보호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겠다. KISO JOURNAL

※ Keyword : 강제적 섯다운제, 게임, 섯다운제

'플랫폼 규제법(안)'에 대한 비판과 우려

김현경 / KISO저널 편집위원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부교수
(hkyungkim@seoultech.ac.kr)



1. 플랫폼 규제법(안) 추진 경과

국회와 정부가 앞다투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규제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0년 7월 13일,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온라인 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¹⁾,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1월 28일 국회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정위 법안”이라 한다)²⁾, 그리고 2020년 12월 11일 전해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방통위 법안”이라 한다)³⁾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그밖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추가로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의 주된 내용은 플랫폼 생태계의 공정과 정의를 실현

하기 위하여 ‘소상공인과 이용자 보호’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에게 강력한 사전·사후 규제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플랫폼 서비스는 혁신 기술에 기반해 빠른 변화·이동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시장진입 장벽이 낮다. 또한 양면·다면시장, 멀티호밍 등의 특성으로 인해 시장지배력·경쟁제한성의 판단이 곤란하며 시장점유율 역시 유동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법안에 대한 학계 및 업계의 강력한 비판이 제기됐고, 최근 정부는 수정안을 제안하며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고자 했다. 방통위 법안의 주된 수정사항은 공정위 법안과의 중복요소를 제거하고, ‘디지털 플랫폼 발전’ 측면을 고려해 법률명칭·개념·제정목적을 변경했으며 규제대상을 축소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실

1) 의안번호 2101835.

2) 의안번호 2107743.

3) 이 법안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공정위가 주요 관할인 위 법안들에 대한 대항입법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된 관할이다.

제 소상공인 및 이용자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특히 이러한 규제법안은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거듭 신중을 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법안이 야기할 우려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 비판과 우려

가. 플랫폼 규제 거버넌스의 후진화

디지털 플랫폼은 전 산업영역과 관련되는 만큼 여러 부처가 관여하게 된다. “플랫폼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자”에,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콘텐츠산업 진흥법」상 “콘텐츠사업자”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되며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된다.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관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이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관할은 주로 방송통신위원회이고,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관할은 문화체육관광부이며,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관할은 공정거래위원회이다. 또한 이들이 서비스하는 다면시장의 특성에 따라 부동산 혹은 차량을 매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관할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 영역은 전 부처의 관할 경쟁이 이루어지게 된다. 영역 확장은 부처의 관료정치 현상이다.⁴⁾ 관료정치는 중첩된 영역에 복수의 행위자가 있을 경우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관료정치에서 관료들은 예산을 극대화하고, 국(bureau)등 단위부서 영역을 확장하는 경향이

있다. ‘파킨슨 법칙’이 입증하듯, 관료 조직은 한번 늘어나면 절대 줄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으며, 규제를 통해 일거리를 만들고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세력을 확장한다.

결국 관료주의 속성을 지닌 정부부처는 해당 영역을 자신의 소관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 매진할 것이며, 이러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률을 통해 자신의 소관을 다지는 것이다. 작금의 법안들은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보다는 심화시키고 있다. 플랫폼 법률안은 공정위, 방통위, 과기정통부의 공동규제를 표방하고 있으나 중복규제로서 수범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결국 관료주의에 기인한 과도한 규제 속에서 혁신적 서비스는 사멸될 수 있다. 따라서 관료주의의 폐해로서 부처 간 불합리한 경쟁적 규제 신설이 지양되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나. 진정한 이용자 보호(후생)의 결여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서비스의 보장이야말로 소비자 혹은 이용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플랫폼 생태계에서 유효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본 법안들은 이러한 경쟁 활성화에 오히려 저해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일례로 방통위법안의 ‘거래조건 신고’(법안 제14조)의 경우 정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모든 서비스별로 거래조건을 정해 과기부장관에서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우선 플랫폼이 제공하는 수많은 서비스에 대하여 서비스별로 이용조건을 마련해야 하나, 무엇을 하나의 서비스로 볼 것이며,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수많은 서비스에 대한 정형화된 거래조건이 가능

4) Bowornwathana, B., Poocharoen, O., Bureaucratic politics and administrative reform: Why politics matters. Public Organization Review, 10(4), 2010, pp.303-321.

한지 의문이다. 거래조건을 정형화하여 그에 맞추어 서비스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과연 혁신적 서비스 수용에 친화적인지 오히려 서비스 경직화만 초래함으로써 이용자 불편을 초래할까 우려스럽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 사항은 이미 약관법 등에서 규율하고 있다. 오히려 공공재적 성격이 짙은 기간통신서비스의 이용약관에 대한 규제도 ‘이용약관 인가제’에서 ‘이용요금 인가제’로, 하물며 이용요금에 대한 인가제도 ‘신고제’로 완화해 왔음을 볼 때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조건에 대한 이러한 엄격한 규제는 형평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뿐만 아니라 검색결과·추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노출 순서·방식 등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안 제13조). 그러나 이러한 노출기준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공개는 현재도 시행하고 있으며, 더 세부 기준을 공개할 경우 검색결과 우회 등 어뷰징(abusing)을 야기해 영업방해가 난무하게 될 것이다. 결국 정당한 이용사업자 및 이용자에게 불측의 손해와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또한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결국 서비스 후진화를 초래하며 플랫폼 생태계 발전을 저해한다. 이처럼 법안의 사전규제 대부분의 내용이 이용자 편리 및 후생에 기여할지는 의문의 여지가 다분하다.

다. 플랫폼 서비스의 공공서비스화

방통위 법안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무(안 제3조)를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편리하며 안정적인 서비스를(안 제3조제1항) 그리고 공정하고 차별 없는 서비스

를 제공하여야 한다(안 제3조제3항). 그러나 ‘편리하고 안정적 서비스 제공의무’, ‘공정·비차별 서비스 제공의무’는 사회적·공공서비스에 적용되는 것이다. 오히려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경쟁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가격·서비스에 대한 합리적 차별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적 의무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국가의 인허가를 통해 통제받아야 하는 사회적·공공서비스로 전제한 것이다. 그러나 플랫폼 서비스는 시장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서비스로서 공공서비스가 아니다. 하물며 수정된 방통위법안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안제3조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엄격히 공정한 경쟁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시책 수립 등이 정부의 역할이 될 수는 있지만, 서로 혁신적 서비스를 통해 경쟁하고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민간 사업자의 법적 의무로 규정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공서비스의 책무를 부과함으로써 특허사업자와 유사한 지위로 전락시킬까 우려스럽다.

플랫폼 서비스는 진입단계에서 통제할 위험이 적고, 자유로운 진입·퇴출이 오히려 플랫폼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는 취지다. 즉 대부분의 플랫폼 사업의 내용인 ‘부가통신사업’은 유효경쟁형성을 위한 규제 등 강력하게 규제하여야 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망의 가치를 높이도록 영업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플랫폼 산업의 유동적인 성격과 혁신에 의한 시장 지배의 변동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장의 왜곡과 혁신에의 간섭을 가져올 수 있는 규제를 함부로 도입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플랫폼 서비스를 공공

서비스로 본다면 그간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이와 같은 규제방향이 전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즉 플랫폼 서비스의 자유로운 진입·퇴출을 위해 매우 신중해 왔던 사전규제의 기본원칙이 전적으로 부인될 수 있다.

라. 디지털 플랫폼 발전은 누락된 '발전법'⁵⁾

방통위법안의 수정안은 제1조 입법목적에서 '관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의 내용은 모두 엄격한 사전·사후 규제에 관한 내용이며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진흥 및 발전에 대한 내용은 거의 전무하다. 인터넷에 기반하는 디지털 플랫폼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망의 안정적 제공, 혁신 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 전문 인력양성, 규제 완화 등의 시책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은 침묵하고 있다.

마. 해외 입법에 대한 잘못된 벤치마킹

이 모든 법안에 대한 공통된 정당화 논거 중 하나가 바로 해외 입법 추진 동향이다. 미국⁶⁾과 EU⁷⁾의 사례를 제시하나 우리의 환경과 너무나 다르다. 유럽의 경우 자체 플랫폼 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GAFA)에 대한 견제를 전제로 한 것이

다. 우리는 엄연히 토종 플랫폼이 존재한다. 또한 미국은 주력시장에서 유력한 경쟁자가 없으나 우리는 플랫폼 기업 간 유효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구글 등이 주력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이며 유력한 경쟁자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응되는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유동적이며 유효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구글이 검색엔진과 온라인 광고에서 2000년 이후 꾸준히 8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검색엔진에서 네이버 52%, 구글 43% 등 점유율이 계속 변하며 유동적이다. 전자상거래 역시 네이버(17%), 쿠팡(13%), 이베이코리아(12%), 11번가(6%)등이⁸⁾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배달앱도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잇츠 등의 점유율이 계속 변동하며 경쟁하고 있고,⁹⁾ 숙박앱 역시 야놀자(35.4%), 여기어때(29%), 아고다(11.2%), 에어비앤비(10.8%) 등이 경쟁 중이다.

특히 유럽과 미국의 법안들이 실제 의회를 통과하여 법률로 시행, 집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일부 견해는 현재의 강력한 규제 법안 형태로 입법화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기도 하다. 오히려 2021년 1월부터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국가의 관여나 규제는 필요 최소한

5) 법제명 역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에서 '디지털 플랫폼 발전과 이용자보호법'으로 변경하였다.

6) 2021년 6월 11일 미국 하원에서 거대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는 반독점법안 패키지가 발의되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법안은 ① The 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Act, ② The 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③ The 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 ④ The 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Service Switching(ACCESS) Act, ⑤ Merger Filing Fee Modernization Act (MFFMA)이며, 2021년 8월 11일 The Open App Markets Act(Google/Apple을 대상)도 제안되었다.

7) 2020년 12월 1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 이하 'EU 집행위원회'라 한다)는 디지털 플랫폼(digital platform)을 대상으로 하는 'Digital Market Act'[이하 '디지털마켓법(안)'이라 한다]를 제안했다.

8) SPRi, 매일경제

9) 교보증권(2020년), 국민일보 2021.6.19.

에 그치며 사업자의 자율적인 노력과 시장의 혁신을 존중하는 정부와 민간의 ‘공동규제’라는 방식을 채택했다. 법이 적용되는 대상사업자 역시 아마존, 야후, 애플, 구글, 락쿠텐 등 5개 기업으로 최소화했다. EU와 미국의 법안들도 그 적용대상을 GAFA중심의 4-5개 기업으로 최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약 20여 개의 자국 플랫폼 기업들이 적용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각국이 처한 시장 상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입법에 대한 무분별한 벤치마킹은 가장 지양되어야 할 사안이다.

3. 나가며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혁신 기술에 기반해 빠른 변화·이동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시장진입 장벽이 낮다. 양면·다면시장, 멀티호밍 등의 특성은 시장지배력·경쟁제한성의 판단이 곤란하며 시장점유율 역시 유동성이 크다. 이러한 특

성을 고려한다면 시장의 역동성이 존중되도록 지금의 법안과 같은 사전규제는 신중해야 한다. 이 법안들이 벤치마킹한 대표적 법률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그러나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과 플랫폼 산업을 동일선상에 놓고 유사 규제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플랫폼 비즈니스의 속성을 간과한 너무나 비전문적 발상이다.

미국과 중국 중심의 글로벌 테카콘들이 폭발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미중간의 기술패권에서 우리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다. 국회와 정부는 거시적·전문적 견지에서 디지털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 규제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플랫폼 규제법안들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KISO JOURNAL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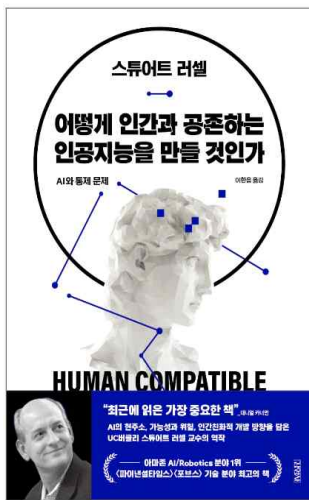
- [1] 김현경,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선진상사법연구, 선진상사법률연구vol., no.94, 2021, pp. 137-185.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전해숙의원 대표발의(2020.12.11. 의안번호 2106369)), 제391회 국회(정기회).
 [3] Hovenkamp, H. Antitrust and Platform Monopoly. Yale Law Journal, 130, 2021

※ Keyword : 사전규제, 승자독식, 플랫폼 독점, 플랫폼 사업자, 혁신기술

'AI 교과서' 저자가 말하는 인공지능과 공존의 길



구분권 / KISO저널 편집위원
한겨레신문사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starry9@hani.co.kr)



인공지능을 둘러싼 논쟁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는 ‘인공지능이 사람을 능가하는 상황이 과연 올 것인가’이다. 기술 발달로 인해 결국엔 사람보다 뛰어난 지능을 지닌 ‘강한 인공지능(Strong AI)’이나 ‘일반 인공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의 등장

에 관한 논쟁이다. 스티븐 호킹,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등 저명인사들이 한목소리로 사람을 능가하는 인공지능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에 나선 바 있다. 한편 인공지능 연구자나 산업종사자들은 “현재의 인공지능 개발 수준은 지극히 낮은 단계이고 강한 인공지능은 공상과학적 상상일 뿐 현실에서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곤 했다. 인공지능 종사자들이 내세운 주장에는 “강한 인공지능을 우려하는 사

람들은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닌 유명인들일 뿐이고, 정작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것도 근거로 들어 있다.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강한 인공지능’을 막아야 한다고, 비전문가들이 황당한 주장을 펼친다는 것이다.

이 논란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무대에 올랐다. 13개 언어로 번역돼 118개국의 1500여 대학에서 교재로 쓰이고 있는 <인공지능: 현대적 접근방식>의 저자 스튜어트 러셀 미국 버클리대 컴퓨터공학 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러셀은 2021년 국내에서 <어떻게 인간과 공존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것인가>(원제: 휴먼 컴패티블)를 펴냈다. 인공지능의 위협을 인정하고 새로운 인공지능 개발 모델을 제시하는 책이다. 기존 저서가 공학도와 전공자를 위한 ‘AI 교과서’였다면, 이번 책은 인공지능이 불러온 다양한 문제들에 관심있는 일반 독자를

위한 책이다. 그는 인공지능에게 인간보다 더 지적인 존재가 되라는 잘못된 목적을 부여한다면 기계는 그 목적을 달성할 것이고 인간은 패배하는 파국이 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어니스트 러더퍼드는 1908년 노벨화학상 수상자다. 양성자를 발견하고 원자핵의 구조를 밝혀내 오늘날과 같은 원자 모형을 만들어낸 인물로, 20세기 초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권위 있는 핵물리학자였다. 러더퍼드는 1933년 9월 영국의 학회 연설에서 “원자핵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갖고 있지만, 그 원자를 변화시켜 힘의 원천으로 삼으려는 것은 헛짓거리다”라고 단언했다. 이튿날 런던 신문에 실린 러더퍼드의 발언을 읽던 헝가리 물리학자 레오 실라르드는 바로 중성자 유도 핵 연쇄반응을 생각해냈고, 이는 특허등록에 이어 핵무기 개발로 연결됐다.

러셀이 ‘강한 인공지능’ 등장을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내세운 핵물리학 분야의 사례다. 러셀은 “인간의 창의성을 깔보는 쪽에 내기를 거는 행위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한다. 강한 인공지능의 등장이 필연적인 것이라는 게 아니라, 과학 발달의 역사를 볼 때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스탠퍼드대학이 2016년 펴낸 <AI 100 보고서>는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임박한 위협이라고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지만, 러셀은 이 주장의 잘못을 지적한다. 이 보고서를 비롯한 인공지능 옹호론자들은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이 인공지능 개발을 저해하는 주요인이라며,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가 화성의 인구과잉을 걱정하는 것처럼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라고 지적한다. 러셀은 이에

대해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가 그 등장 시기의 임박성 때문은 아니라며, 장기적 위험이라고 해도 걱정하기 알맞은 때는 나중 시점이 아니라고 말한다. 또한 ‘화성의 인구과잉 걱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화성은 한 사람도 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화성 자체가 인구 과잉인 상태라고 반박한다.

강한 인공지능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의 논리 기반인 어빙 굿의 ‘지능 폭발’ 개념에 대해서 러셀은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지능 폭발’은 기계가 자신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발전된 버전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똑똑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하는데, 이는 기계가 스스로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능력이 없다면 결코 시작될 수 없다고 말한다.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기계를 빠르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답을 더 빠르게 얻는 방법일 뿐”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지능 폭발과 강한 인공지능의 등장은 미지수이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근본적 전환을 가져온다는 게 그의 견해다. 오늘날 인공지능과 제어이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이버네틱스의 창시자 노버트 위너는 1964년 저서 <신과 골렘>에서 “이전에 인간의 부분적이고 미흡한 목적관이 비교적 무해했던 까닭은 그러한 목적을 실행하는 데 기술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의 무능함 덕분에 인간의 어리석음이 끼칠 전면적인 파괴적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온 영역의 하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러셀은 “이 보호의 시대가 빠르게 끝나가고 있다”고 말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과학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며, 사람은 거의 모든 영역에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을 적용하고 인간의 목적을 기계를 통해 광범하게 이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러셀은 기계를 인간이 부여한 목표를 수행하는 도구로 보고, 인공지능 개발의 표준 모형 또한 인간이 인공지능에 어떠한 목적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그 쓰임이 달라진다는 주장을 한다. 그래서 인간이 기계에 인간보다 더 지적인 존재가 되라는 ‘잘못된 목적’을 부여하면 장기적으로 기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고 인간은 패배할 것이라고 말한다.

인공지능 분야 최고의 전문가인 러셀이 우리에게 인공지능에 대비하라고 일러주는 길은 그래서 기계보다 사람을 연구하는 방법이다. 교육제도와 과학탐구를 물질세계보다 인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래엔 지적 노동이건, 물리적 노동이건 반복적 업무는 기계의 몫이다. 그는 미래에 사람들의 주요한 역할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켜주는 인간 관계 기반의 직무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인간에 대해 현재보다 훨씬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게 될 때 인간에게 주어질 일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러셀은 기계보다 사람이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또 사람이 하기를 선호할 일이

무엇인지 질문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대부분 ‘돌봄’ 직무다. 어린이나 노인 보살피기, 심리상담 등 전통적인 활동만이 아니다. 진로 설계 전문가, 인테리어 디자이너 등의 직업들도 사실은 고객과 소통하며 개인의 삶을 발전시키는 일이다. 친구도 개인의 삶을 발달시키는 목적에선 마찬가지다. 인문학과 인간학이 인류의 미래에 핵심적이라고 러셀이 말하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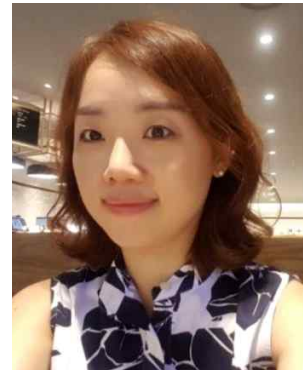
러셀의 기술통제에 관한 견해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답이 없더라도 문제를 인식하고 거론하는 게 중요하다는 태도를 강조한다. 그는 필자와의 2021년 8월 〈한겨레〉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무도 문제를 인식하지 않거나 얘기하지 않는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내게 이해되지 않는다. 체르노빌 핵발전소의 문제는 알려져 있었지만, 설계자들이 언급하는 게 금지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았고 발전소는 폭발했다. 연구자들이 문제를 솔직하게 논의하는 게 필수적이다. 우리가 문제를 의도적으로 숨긴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인공지능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내가 제안한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은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날 때에도 인간이 통제권을 잃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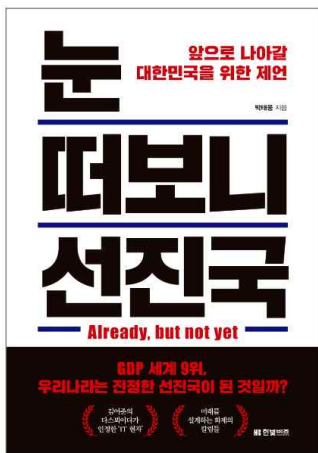
KISO
JOURNAL

※ Keyword : 기술통제, 스텐트러셀, 인공지능, 지능폭발

한국사회의 '경로의존성'에 주는 일침



이희옥 / KISO저널 편집위원, 법학박사
(heuiok.lee@navercorp.com)



BTS가 한국어로 부른 노래로 빌보드를 누비고,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을 거머쥘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해당 기간 GDP 위축이 가장 적은 국가이다. 어디 그뿐인가. 각국의 제조업이 휘청거린 시기에 때마침 중국의 물량 공세에 고전하던 한국의 조선업은 기술력 우위를 입증했고, 전기차 시대를 맞아 반도체의 가치는 우뚝 솟았다. 그리고 보니 이 책의 제호대로 정말 우리는 '눈 떠보니 선진국'이 되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한국사회를 '헬조선'이라 칭하는 것은 특정인들의 지나치게 자조적인 모습일까? 2021년 한국은 하루 평균 38명이 자살하고 0.92명이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률을 기록하고 있으니 그 또한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씁쓸하다. 특히 높은 청년실업률과 천정부

지로 치솟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우리의 암울한 이면이다.

한겨레신문을 거쳐 엠파스 등 IT업계를 경험한 한빛미디어 의장인 저자는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바빠 오다 빼먹은 것들을 챙겨야 한다고 일침을 놓는다.

사실 요약이나 서평이 그다지 필요치 않을 만큼 이 책은 간결한 표현, 알기 쉬운 개념 정의를 통해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아가 처방전까지도 명료하게 제시한다. 아래에서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가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선진국은 정의하는 사회이다. 백서(白書) 보다는 녹서(錄書)를 준비하자.

독일의 <산업 4.0>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산업계가 어떻게 바뀌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담은 백서이다. 이 책은 이 백서에 앞선 녹서를 주목하라고 한다.¹⁾ 독일은 백서를 내놓기 2년

전 녹서를 통해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담긴 백서를 내놓으면서 미래사회에 대비하고 있었다. 토론과 합의를 생략하고 속도에 사활을 거는 우리로서는 ‘아니 인공지능 발전이 급속하다던데 어떻게 토론에 2년을 쓰나?’라고 반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독일이 2년여 시간을 갖고 완성한 백서를 우리는 화들짝하고 놀라서 읽고 베낀 게 4년 전이다. 생각건대, 선진국이란 오히려 남들보다 앞서서 질문하고, 정의하는데 시간을 들더라도 충분히 자신 있는 사회가 아닐까?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정의’를 내리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후발 추격국으로 ‘미친 속도’를 내서 선진국을 따라잡았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못했다. 저자는 ‘원격진료’에 관한 공방에서, 원격진료에 대한 정의 없이 시작된 논의가 결국 ‘어떻게’로만 걸 돌게 된 것을 예시로 꼬집는다. 단적으로 근래 인공지능 규범에 관한 논의가 인공지능과 그 활용이 무엇인지 관한 토론이 생략된 채 그것을 어떻게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논의만 무성한 것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이제라도 돌이켜 생각해 볼 일이다.

둘째, 신뢰 자본 · 경로의존성 탈피· 명확한 상벌 체계가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커피숍에서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에 다녀와도 노트북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저자는 이를 신뢰자본이라고 한다. 서울역에

검표원이 없이 열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대표적인 신뢰자본의 예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뢰자본의 모범례가 서울역 앞에서 멈췄으니 제도와 운영으로 이어가도록 해보자는 것이다.



한편 이 책은 脫경로의존성을 말한다. 시대가 바뀌어 4차 산업혁명을 운운하면서도 조선시대의 제도, 법률, 관습,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경로의존성으로 당장 내지 않게 된 비용은 미래에 눈덩이처럼 커진다. 영국에서 오른손잡이인 마부가 휘두르는 채찍으로부터 행인을 보호하려고 왼쪽 통행을 하다가 자동차마저 우핸들로 정착하게 된 사례가 대표적인 경로의존성이다. 웃지 못할 것은 별 생각 없이 이를 채택한 일본도 덕분에 비싼 비용을 치루게 됐다는 점이다.²⁾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의 경험에는 반면교사로 삼을 것도 많다. 소셜미디어시대에 속보와 특종을 외치는 신문사들의 경로의존성, 검경의 기소제도가 이제는 바뀌어야 할 것들이다. 아울러 새로운 기술이나 플랫폼의 등장에 기존 규

1) 유럽연합에는 녹서라는 제도를 갖고 있다. 녹서란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사회 정체의 토론을 요청한 제안으로 독일 정부는 <노동 4.0>이라는 백서를 내놓기 2년 전 <노동 4.0>을 내놓고 사회 전체의 토론과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토론에는 공기업, 협회, 기업, 학계 전문가, 일반 시민들이 참여했다. 박태웅, 「눈떠보니 선진국」, 한빛비즈(2021), 17-19면.

2)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오른손으로 수동식 기어를 조작하기 때문에 편의상 핸들을 왼쪽에 둔다. 우핸들을 좌핸들로 바꾸려면 단순히 운전대만 바꿔서 될 일이 아니다. 파워트레인, 인터레어, 제조시 내수용과 수출용 차로 2 라인을 만들어야 하는 등 비용적인 소모가 대단하다. 박태웅, 이 책의 본문, 84-85면.

제의 틀을 이름만 바꿔 적용하려는 규제당국의 경로의존성도 돌아볼 일이다. 모든 경로의 존성으로 인한 경로 독점은 무너지게 돼 있다. 지능정보화가 이끄는 다음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바뀐 물길을 찾아 떠나야겠다.

셋째, 중산층과 정치야말로 선진국을 지탱하는 지표이다.

이 책에서는 선진국의 정부가 할 일은 분명하다고 한다. 바로 중산층 비중을 늘리는 것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지만 역사적으로 봐도 허리인 중산층이 튼튼한 사회가 늘 가장 건강했다. 중산층이란 경제적 지표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건강,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척도가 있을 수 있다. 언급했듯이 몇 가지 경제지표로만 보면 한국은 분명 선진국이다. 그러나 현실은 10대는 대학을 가기 위해 체력과 학습능력의 기본기를 갖추기 시기에 수험에만 전념하고, 가까스로 대학의 문을 닫고 나온 2·30대는 변변한 직장을 찾느라 전전공공이다. 저자는 중산층 비중을 늘리는 것을 정부의 최고 지표로 삼아도 좋다고까지 강조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일을 할 정치인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자는 정치는 한 사회의 자원을 분배하는 시스템을 결정하고 마련하는 일임에도 한국사회는 유독 전문직으로서 정치가가 없다고 한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정치가로 입문하는 과정이 길다. 학생 때부터 당에 가입하고 지방의회에 출마해 의정 능력을 입증하면 그 다음 차원의 선거에 도전해 다시 능력이 입증되고, 지방자치 단체장에서 중앙정치로 호출이 된다. 그래서 30대에도 정치가로서의 충분한 경험과 실력을 쌓을 수 있다. ‘오래된 맛집만큼이나 뛰어난 정치인도 시간이 필요하다.’

넷째,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은 데이터에 있다.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가인 저자는 이 책의 상당분량을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의견으로 담아냈다. 특히 제3부는 국무총리 산하의 제4기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위원으로 일했던 과업과 저자의 의견이 포함돼 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위협으로 거론되는 페이스북의 감정조작 실험과 케임브리지 애널리카 사례에서는 ‘조작된 감정’을 기술의 위협요소로 꼽는다. 그리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응한 안전장치가 있는 변화수용체계를 만드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한다. 저자가 말하는 인공지능의 위협에 대한 우려는 학계와 산업계에서 즉시하고 있는 주제들이다. 중요한 점은 인공지능의 편향과 불투명성에 대응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입력 데이터의 적절성을 가려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저자는 이 책 전반에서 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 정부가 먼저 나서서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 바로 공공데이터의 공개와 활용이다. 특히 공개된 데이터만큼은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의 양식으로 공개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데이터는 새로운 석유이다. 디지털 뉴딜에서 데이터 활용에는 기계가 쉽게 판독 가능한 데이터가 준비돼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가 비록 경제지표에 국한된다고 하더라도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했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근대사회만을 생각하면 한국사회는 2차대전 이후 신생독립국에 가깝다. 짧은 시기, 이 책의 저자가 말한 ‘미친 속도’로 이만큼을 이룬 것이다. 저자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실천적 항목으로서 다양한 개념과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중 인상적인 한 가지를

뽑으려면,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정의를 내린다는 것이다’라고 언급한 부분이다. 그리고 그 정의는 이제껏 달려온 그 미친 속도만큼의 집중력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들을 공론장으로 들고 나와 정부와 기업, 시민 모두가 서로의 입장에서의 의견들을 들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나에게 세상을 구할 수 있는 단 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55분은 문제를 정의하는 것에 사용하고 나머지 5분은 그 문제를 푸는 데 쓸 것이다.” - 아인슈타인 - KISO JOURNAL

※ Keyword : BTS, 경로의존성, 선진국, 신뢰자본, 중산층

KISO저널 편집위원장에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 선임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가 KISO저널 새 편집위원장으로 선임됐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2021년 8월 24일 제171차 정책위원회를 열어 황창근 편집위원장 후임으로 김 교수를 결정했다. 김 교수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 및 통신분쟁조정위원, 정보통신정책학회 책임편집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차기회장,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특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김현경 신임 편집위원장은 2021년 1월부터 KISO 정책위원으로 활약하며 KISO 정책규정 제·개정과 심의 결정 등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선임 결과에 따라 김 위원장은 정책위원과 KISO저널 편집위원장을 겸임하게 됐다.

김 위원장은 “KISO저널은 국내에서 드물게 자율규제기구가 발간하는 독자적 학술지로서 표현의 자유, 자율규제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해 왔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KISO저널이 자율규제의 독자성과 객관성 그리고 능동성 강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ISO저널은 KISO 편집위원회가 2009년부터 발간해온 계간지이다. 국내외 인터넷 자율규제 관련 법제, 현황 등에 대한 전문 자료, 정보통신 업계 다양한 이슈와 시각을 담아내고 있다.

KISO는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이용자 책임을 제고함과 동시에 각종 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09년 출범한 인터넷 자율규제 기구다.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 13개사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KISO**
JOURNAL

KISO,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 조치 결과 발표

국내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 5건 중 4건은 백신과 관련한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지난 4월 28일부터 10월까지 네이버, 카카오 등 회원사의 카페, 밴드, 블로그에 실린 코로나19 관련 게시물 가운데 허위조작정보로 확인된 1,538건에 대해 삭제 등 조치를 했으며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예방(백신)'과 관련한 내용이 1,210건(78.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치료' 관련 168건(10.9%), '존재' 관련 139건(9%), '전염' 관련 21건(1.4%) 순으로 집계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코로나19 백신을 통해 DNA를 조작하거나 뇌를 조종할 수 있다' △'백신 접종 부위에 자석이 붙는다'는 등 잘못된 정보로 백신의 유해성을 주장하거나 △'바닷물 가슴기로 코로나19 치료할 수 있다' △'PCR 검사 시 유전자증폭 횟수를 임의로 조작하여 확진자 수를 조작한다'는 등 치료법이나 전염성 등에 대한 허위조작정보를 게시한 내용 등이다.

처리 건수를 월별로 보면, 8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9월부터 다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KISO는 인터넷 공간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 15일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을 신설했다.

이를 근거로 KISO는 4월 28일부터 코로나19의 존재, 치료, 예방 및 진단, 전염,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자가격리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게시물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 질병관리청의 공식발표로 허위조작정보임이 명백히 확인된 경우 삭제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인호 KISO 정책위원장(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인터넷 사업자들이 국민의 신체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조작정보를 자율적으로 규제한 결과여서 의미가 있다”며 “유연한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자율규제의 장점인 만큼 향후 '위드코로나' 전환에 발맞춰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 검토와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ISO**
JOURNAL

KISO, 포털 인물정보에 '댄서' 직업군 추가... 사회 트렌드 변화 반영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공하는 인물정보 서비스에 '댄서' 직업명이 신설되고, 관련 직업 분류가 대폭 확대된다. 해당 직업으로 등재될 수 있는 기준도 완화해 '댄서' 직업군의 인물정보 등록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서비스운영소위는 인물정보 직업목록 분류의 상위 항목인 '직업분류2'에 △댄서 △안무가를 신설하고, 신규 '노출 직업명'으로 △댄서 △댄스안무가 △무용안무가를 추가하는 등 인물정보 직업목록과 등재 기준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ISO는 최근 TV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스우파)' 열풍에 힘입어 '댄서' 관련 직업군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높아지는 등 사회 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직업분류체계를 개정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인물정보 직업분류 상위 항목에 '댄서'를 신설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대중문화인 하위 분류로 흩어져있던 △스트리트댄서 △비보이 △비걸이 해당 직업분류로 조정돼 체계를 갖췄다. 아울러 세부 분류에서도 현실적 언어 사용 빈도를 고려한 '댄서' 항목을 신설해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댄서'들을 아우를 수 있게 됐다.

'댄서' 직군의 등재 기준도 보다 완화했다. 기존에는 국제대회 입상 내역 등이 필요했지만 이 기준을 삭제하고, '관련 대회에 참여하거나 수상한 경력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해당 직업과 관련하여 방송에 출연하거나 공연 등의 작품에 참여한 경력이 확인되는 경우(단,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 관련 활동 또는 동아리 공연 등 교내 활동 제외)'로 개정했다.

'안무가'에 대한 분류도 확대 개편했다. 기존에 '무용인' 하위로 분류되어 있던 '안무가'를 상위 항목으로 조정하고, 그 하위에 △안무가 △댄스안무가 △무용안무가등 유형별로 세분화한 직업명을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호(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ISO 서비스운영소위원장은 "댄스 관련 직업이 조명을 받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해당 직업군의 정체성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직업목록과 기준을 재정비했다"며 "앞으로도 사회 변화와 트렌드를 반영하여 인물정보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원칙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ISO,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 참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12월 23일 열린 제1차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에 참석해 KISO 및 회원사의 자율규제 활동을 소개하고, 자살유발정보 예방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 2019년 7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자살유발정보 유통 시 처벌 규정이 생겨나고, 자살유발정보 차단을 위한 민관 협력기반이 마련됐다.

자살유발정보란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 자살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을 실행 또는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문서, 사진, 동영상 등),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다.

KISO는 2012년 6월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는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 존중의 가치가 실현되는 인터넷 공간을 만들기 위해 자살예방에 관한 정책 결정을 통해 인터넷상의 자살 정보 차단을 위한 규정을 시행해왔다.

또한, 2015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경찰청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자살 시도자의 구호 조치를 위해 협력해왔다.

KISO는 이날 민간위원 자격으로 참여해 자살유발정보의 범위 및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명확하게 정리된 협력 사안을 중심으로 정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ISO저널 제45호>

발행일 2021. 12. 30.

발행인 이인호

발행처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표지디자인 망고보드

◆ KISO저널에 게시 및 수록된 글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KISO저널 45호의 본문은 나눔명조체로 작성되었습니다.

◆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허가 없이 본 내용의 무단전제나 복제를 금지합니다. 내용에 관한 문의가 있으시면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6959.5204)

0615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7층

(삼성동 143-37, 현대타워)

대표전화 02.6959.5206

대표메일 kiso@kiso.or.kr

홈페이지 www.kiso.or.kr

저널 홈페이지 journal.kiso.or.kr

<편집위원>

김현경 교수(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구본권 소장(사람과디지털연구소)

김병일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소혜 교수(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이희옥 차장(네이버 서비스 정책실)

김훈건 팀장(SK커뮤니케이션즈 법무팀)

전수민 과장(카카오 대외협력팀)

편집간사/남동희, 장세리 연구원(KISO기획팀)



ISSN 2287-8866(Online)